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26. 1. 9.) 속기록(의결필요)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주은선위원장	<p>안녕하세요. 지금 아직 못 오신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요. 시간이 2시가 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4차 회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회의는 의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의 발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님하고 류재린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발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김도형 위원님께서 발제를 20에서 25분 사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p>
김도형위원	<p>네 안녕하세요. 명지대 김도형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관련해서 발표를 준비했는데 제가 소주제를 보조금 정책의 재평가라고 잡았습니다.</p> <p>2010년 이후에 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입 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p> <p>일단 사각지대 개념도. 참고로 지금 보시는 발제 자료랑 슬라이드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청취불가)</p> <p>사각지대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회보험료가 부과돼서 징수가 되면은 이제 사각지대가 없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면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그래서 이거를 저는 a라고 표시한 저 부분이 이제 제도적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법의 허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p> <p>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일부입니다. 그래서 b라고 표시한 부분은 이제 제도외적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과가 되기만 하면은 징수율은 거의 99.5%여가지고 거의 다 징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이 발표에서 논의할 사각지대에 해당하고 특히 b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시간을 할애할 텐데 이거는 사실은 조세 순응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p> <p>이 사각지대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게 가입 기간하고 서로 연결이</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인연금 월 지급액을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산식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비례해 가지고 월지급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20년 미만 가입자랑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 지급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문제는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20년 미만 수급자들이 20년 미만 가입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도 수급자의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가입자들이</p> <p>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크게 제도적 요인, 제도외적 요인 나눠서 살펴보고 제도외적 요인은 사업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를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제언을 드리고 맺음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p> <p>우선 제도적 내용을 보시면은 이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이 됐지만 당연 적용이 점진적으로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인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을 다 포괄하는 것은 2004년이기 때문에 거의 16년 가까이 당연적용이 완전히 국민의 국민연금으로 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004년에 제도적으로는 완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시점으로부터 따지면은 한 20년 정도 흘렀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짧은 것이 기존 수급자들이 이상한 일은 아닌 거다라는 것이고요.</p> <p>그래서 이걸 출생 연도별로 가입 기간하고 노령연금액 표시를 한 건데요. 뒤에 나중에 태어난 세대들이 당연히 가입기간이 길고 노령연금 급여도 높다. 그리고 최근에 1961년생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지급액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맹점을 사실은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p> <p>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보면 사실은 납입연령이 지금 59세로 고정되면서 의도치 않게 어떤 일종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점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현재 수급 연령이 63세인데 납입연령은 59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0에서 64세, 그러니까 수급 연령은 이제 65세까지 갈 텐데, 이 연령 구간에서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근데 보시면 60에서 64세 남성 고용률은 거의 70%를 넘고 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9세 남성 고용률을 보면은 지난 50년간 꾸준히 하락하면서 세계적으로도 거의 남유럽에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그림을 다 모아보면은 굉장히 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노동시장에 굉장히 오래까지 남아 있는 그런 식으로 근로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데 제도가 이 변화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연령을 이렇게 고정시키면 가입 기간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제도외적 요인을 보시면 일단 사업장 가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률도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은 2010년까지만 해도 가입률이 한 75% 수준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용 대상 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의 비율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 가입률은 이제 사업장 규모별로 굉장히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 가입률이 40%로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기준 당연 적용 대상 근로자의 4명 중 1명이 미가입 상태였다. 그리고 이 미가입이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테크니클리는 이제 사용자가 미신고를 하는 거죠.</p> <p>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거는 2024년 자료로 만든 건데요. 가입자하고 미가입자 특성 차이를 보시면은 가입자는 가입자의 대부분 90%가 넘는 가입자가 정규직이고요. 미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85%가 임시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종사상의 지위 같은 것이 지금 가입 미가입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가입자중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중이 45%에 이르고요.</p> <p>그리고 임금이 상당히 낮다. 절반 약간 좀 안되는 수준이다. 가입자에 비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미가입자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보험 이론에 따르면 역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기대수명이 더 짧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연금 그러니까 종신 연금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적은 것이죠.</p> <p>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 안 하고 보험료를 아</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껴가지고 뭐 노후 저축을 잘 형성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덜 문제가 될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미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자발적 신고를 유인하자고 하는 게 이제 2012년부터 시작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고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이제 이게 보조금 정책의 시작이다. 처음에는 보험료를 국고보조 50% 보조를 했고요.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저임금 근로자 하고 그 사용자에게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p> <p>그래서 그것의 국민연금 가입자 증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운데 있는 수직선의 오른쪽이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세로축이 가입자 수입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보시면 굉장히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다. 평균적으로 한 0.02명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0.66% 증가 시켰다 라는 것이고요.</p> <p>이 보조금 수혜자는 개념적으로 보시면은 상시 가입자랑 정책 순응자로 구성이 됩니다. 상시 가입자라고 하는 거는 보조금을 주든 안 주든 어쨌든 사회보험에 가입했을 근로자고 정책 순응자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조금 때문에 국민연금이 가입한 근로자인데 이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p> <p>정책 순응자는 우리가 추정을 한 거고 보조금 수혜자 수는 원자료 행정자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업 예산의 98%가 상시 가입자에게 지급되었다, 그래서 이거 재정 낭비 굉장히 심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럽의 사회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계산된 재정 낭비율보다 훨씬 큰 수준으로 분석이 됐습니다.</p> <p>그래서 이 분석의 또 다른 함의는 사업 폐지를 하면 제가 효과가 굉장히 낮으니까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이제 정부에다가 제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려했던 것이 그러면 사업을 폐지해 가지고 가입자가 이탈하면 어떡하냐 이런 건데 사실은 이 인과효과 추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잠재적 이탈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책 순응자들이고 그것의 수가 굉장히 작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폐지한다고 해서 가</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입자가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것이 분석의 함의고요.</p> <p>실제로 신규 가입자로 이 사업을 제한한 다음에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률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앞에처럼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2018년 이후에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완전히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영세 사업장 근로자만 국민연금 보험료 4.5%의 절반만 납입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p> <p>이 사업의 가입자 증대 효과를 추정해 보면은 두루누리 시범사업 고용 효과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그냥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미가입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루누리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취약층에 대한 소득 이전이니까 고용 증대 효과가 없어도 무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소득 지원이라는 거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목표가 아니고요.</p> <p>그리고 최근에는 저소득 근로자 타겟팅도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붉은색 선이 임금 상한입니다. 이 임금을 넘어가게 되면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2025년 기준으로 지금 27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민연금 a값 그러니까 가입자 평균에 거의 굉장히 근접하고 있는 수준이고 최저임금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돼 있어서 타겟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죠.</p> <p>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사실 보조금의 귀착인데요. 이게 저소득 근로자한테 주기만 하면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수혜를 편익을 얻는거냐 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 보조금은 근로자에게 완전히 귀착이 됩니다. 근데 이 두루누리 사업의 맥락에서 보면은 사용자 혹은 고임금 근로자가 보조금을 캡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귀착은 실증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이제 논의를 드리는 것인데요.</p> <p>어쨌든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연된 임금으로 근로자들이 인식하지 않으면은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은 사용자가 캡처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 내 형평성 규범이 존재하게 되면은 비적격 근로자가 적격 근로자에 제공된 보조금을 세어를 하</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게 되는데, 이것을 렌트 셰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 지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p> <p>지역 가입자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연금 보험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를 지원하도록 되었는데요. 문제는 지역 가입자 지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득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기장 의무가 없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하거나 간이 과세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장부가 없다는 얘기죠.</p> <p>그리고 소득 축소 신고가 굉장히 일반적이어 가지고 이 저소득자 식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설명하는 한 가지 요인인 데요. 그래서 1인당 소득 대비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지하 경제가 되게 만연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보다도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고요.</p> <p>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한테는 보험료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는 주장 중에 하나는 사업장 가입자는 50%만 내면 되는데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100% 다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는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게 조세 귀착의 불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적 귀착이 반드시 경제적 귀착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귀착은 법적 귀착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보험료가 혜택과 연동되는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보험료라는 것이 근로자에게 모두 전가된다는 것이 이론적 실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 <p>그래서 사실 근로자의 법적 귀착은 50%이지만은 사업장 가입자의 법적 귀착이 50%이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다 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더 낮은 임금을 감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다 본인들이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p> <p>그래서 정책 제언의 첫 번째는 납입 연령하고 수급 연령을 연동해야 된다. 그래서 가입 기간을 사실 올리는 거는 연금의 적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다라는 것인데, 이게 연동했을 때 한 가지 문제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 보험료율이 보험 수리</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적으로 공평한 보험료율에 엄청 크게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 납입 연령을 수급 연령하고 연동을 하면서 보험료율을 균형 보험료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p> <p>보험료 지원 제도 개편 방향 관련해서는 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장기적으로 페이스아웃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는 것이고요. 단기 개선 방향은 현행 정률 지원에서 정액 지원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정률 지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경계 구간에서 소득 역전이 발생합니다. 270만 원 경계구간에서. 그래서 정액 지원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은 소득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는 셈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 역전도 완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p> <p>그리고 지역 가입자 지원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엄격한 과세 체계가 자영업자에 대한 성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득이 파악이 돼야지 사실은 이제 저소득층을 식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현행 지금 되게 느슨한 과세 체계를 고려했을 때는 근로자보다 더 엄격한 소득 상한을 유지하는 것이 좀 필요하더라는 것이고요.</p> <p>그리고 이거랑 연결되는 건 어쨌든 부과 징수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사실 자영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강화가 되어 왔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에 실시간 소득 파악 일용 근로자부터 인적용역사업자까지 굉장히 소득파악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자영업자의 간이 과세 제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소득 파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지금 사실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데 2024년 7월부터 간이 과세 매출액 기준은 오히려 인상이 돼 가지고 거꾸로 정책이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p> <p>그리고 지금 크레딧 제도는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를 발생 시점 기준으로 전액 국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도 외적인 목표를 위해서 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는 기금이 70% 들어가고 예산 30%구요. 그다음에 수급권 획득 시점에 사실 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p> <p>그리고 군복무자 같은 경우도 예산이 100%지만 이것도 수급권 획득 시점에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실업크레딧도 고용보험 기금의 75%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문</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제다. 그래서 사전 적립을 할 수 있게 국고 지원을 해야 되고요. 사전 적립을 할 수 있게, 발생을 했을 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책 제언이고요.</p> <p>맺음말은 이제 제가 2014년부터 10여 년간 사각지대의 문제를 들여다봤는데 제가 봤을때는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일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조세 제도라든지 아니면 노동 시장의 특질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세 제도 측면에서 보면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미신고하는 문제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비공식 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아직도 잔존해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의 생애주기 패턴의 변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p> <p>그래서 사회보험의 틀을 넘어서는 어떤 좀 더 거시적인 접근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사실 선진국을 보면은 이 부과 징수 체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비공식 노동시장이라는 게 사실상 소멸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보험 사각지대라는 개념 혹은 논의 자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p> <p>그리고 보조금 제고하고 가입률 따지고 이런 거는 다 임의가입 제도에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비공식부문이 엄청나게 큰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사각지대 논의가 만발하고 있습니다.</p> <p>그래서 이 그림은 사각지대에 대한 제가 문헌을 뒤지다가 너무 없어가지고 예전에 하여튼 결국에 발견한 건데 이게 80년대에 나온 논문인데 서유럽의 사회보험 커버리지에 대한 표인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굉장히 오래 걸렸다. 약 한 세기가량 걸렸다는 것이고요.</p> <p>그래서 이 거시적 과제가 해결이 돼야 소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러면 이게 텍스-베네프트 링키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공적 논의가 활성화되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서 재정적인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류재린 위원님의 발제가 있겠습니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류재린 위원	<p>다. 역시 20~25분 사이로 해 주시면 됩니다.</p> <p>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 실태와 보편적 포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인데요. 왜 연금개혁 논의에서 보편적 포괄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각지대가 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사각지대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p> <p>공적연금의 보편적 포괄성이라는 건 사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적연금제도의 보호하에 약간 법적 실질적으로 다 포괄되어서 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냐를 의미합니다. 이게 사실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그런 유니버설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논의가 이제 2000년에서 2010년대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법적인 제도, 제도적 적용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가입과 기여를 통해서 포괄돼 있냐를 보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p> <p>그럼 이 사각지대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각지대 해소라는 건 보편적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제도 밖에 있는 사람도 제도 내로 포괄을 해야되고 이 연금의 수급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보편적 포괄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와 그에 따른 기여 격차가 이제 시간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 포괄성을 제고한다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 <p>근데 보편적 포괄성이 낮은 상태에서 이제 뭔가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기업과 특정 집단에 집중되거나 제도적 정합성이 이제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문제는 보편적 포괄성이 상당히 확보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편적 포괄성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 목표 중에 급여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이제 트릴레마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포괄성이 각 요소들과 다 상충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p> <p>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가입자를 포괄할수록 a값이 하락하고 그러면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급여가 하락할 수가 있고요. 또 저부담 고급여 체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포괄되면 포괄될수록 a급여분이 또 증가하게 되고 그럼 재정 수지가 더 악화될 수가 있죠.</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그래서 연금개혁 논의에서 이 보편적 포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트릴레마 관계를 무시하고 우리가 뭔가 제도개혁을 논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 <p>기존의 사각지대 연구는 사각지대를 주로 적용 사각지대와 급여 사각지대로 많이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좁게 보면 가입 상태이지만 보험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납부예외나 아니면 장기체납 그리고 넓게 보면 가입 단계에서 발생하고 국민연금 가입에서 적용제외 된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넓은 범위를 적용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고요.</p> <p>급여 사각지대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급여 수준이 낮은 상태 그러니까 적용 사각지대의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가입 공백이 있으면 가입 기간이 부족해지고 그게 또 급여가 낮은 그런 걸로 이어지는 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로입니다.</p> <p>그럼 이제 그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외부의 환경 변화 특히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이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p> <p>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동 시장에서 어떤 비표준 고용 관계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고 있죠. 기간 및 시간제 같은 전통적인 비표준 고용 관계도 있지만 초단시간 노동, 다자간 노동, 플랫폼 노동, 종속적 자영업, 특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고용 형태가 확산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정규직 중심, 전일제 중심, 1인 생계부양자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1인 1가구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격 관리 체계와 보험료 징수 체계가 노동 시장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p> <p>두 번째는 이제 기여 회피입니다. 근데 기여 회피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과 소득 파악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게 결합돼서 기여 회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지역 가입자 자격 관리가 이제 잘 안 되는데 소득 파악률이 낮고 다 신고소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 회피는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드리겠습니다.</p> <p>그래서 이 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사각지대로 이어지냐라고 보면 사실 국민연금에서 설계와 규정을 놓고 보면 비표준적 노동자를 이제 제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런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자영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배제하는 요인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 납부하는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p> <p>1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생각보다 국민연금의 자격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득 유무, 연령, 보험료 납부 이력,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자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적용 제외자로 분류되면서 아예 자격 관리에서 배제가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가입 종별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징수되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p> <p>그래서 10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입 종별로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신고하면 자격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게 되고 보험료는 원천 징수 방식으로 부과 징수가 되는 그러니까 개인이 뭘 선택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것과 무관하게 가입 이력이 그냥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p> <p>반면에 이제 지역 가입자는 개인의 소득 신고를 전제로 자격이 결정되고 보험료도 개별로 고지됩니다. 그래서 개별 납부하는 거고 그래서 소득 파악 여부나 신고 시점이나 납부 능력에 따라서 적용 상태 자체가 달라지고 자격 형성과 가입 이력이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p> <p>정리해 보자면 적용 사각지대라는 게 제도 설계 자체보다는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 즉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또 징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누적되어서 급여 사각지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p> <p>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합성이 개선되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가입률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각지대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납세자들 규모를 보면 쪽 줄어들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장기 체납자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감</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소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단이 굉장히 열심히 자격관리를 해서 보험료를 걷는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p> <p>외형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만 (청취불가)만 보면 격차가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7페이지 보시면 가입률 자체는 높아지고 있는데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여전히 상용직이나 정규직에 비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p> <p>이것도 제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가지고 잘라서 본 건데요. 그 연령대 통제하면서 자격을 보면 상용직은 거의 99%가 가입돼 있는데 이제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은 굉장히 가입률이 차이가 있다. 자영업자도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격차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임시 일용직 중에 4분의1 정도는 임금 근로자인데 지역 가입자로 갈 수 있다는 거죠.</p> <p>실제로 지역 가입자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지역 가입자의 한 26.9%가 근로소득자인데 지역 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고용이 불안정한데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안정적으로 가입해서 쌓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 부과 징수 체계나 자격 관리 체계가 노동 시장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p> <p>다음으로 이제 자격 종별로 징수율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징수율이 99.3%, 99.5% 이 수준인데 지역 가입자는 최근에 많이 좋아져서 80%입니다. 약 한 30% 포인트의 격차가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험료 부과 징수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보험료 부과 징수가 결국은 징수의 격차로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여기서 이 그림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짚고 넘어갈 게 이 보험료 지원을 받는 농업인은 징수율이 96% 수준에 육박하는데 비농업인은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p> <p>그러니까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가 소득 파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또 이런 격차들이 이제 가입 기간의 격차로 결국 누적돼서 나타납니다. 가입 기간을 보시면 가입 종별로 평균 가입자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노령연금을 확보한 연령대도 가입 종별로 차이가 납</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니다.</p> <p>사업장 가입자는 35세, 39세가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40에서 49세는 돼야 이제 노령연금 수급권에 근접해 있죠. 이런 격차들이 이제 가입종별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성별 격차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업장 가입자에서도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큼니다.</p> <p>그다음에 기준소득월액도 이제 급여 격차를 낳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기준소득월액 차이는 노동 시장에서 그냥 소득 수준 차이가 나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가 징수 체계 때문에 종별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가입 종별로 평균 기준소득월액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사업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357만 원입니다. 2024년 기준 근데 지역 가입자는 146만 원이죠. 격차가 2배 이상 납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격차가 계속 벌어져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p> <p>이게 여러분 지역 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득이 파악이 잘 안 돼서 스스로 소득 신고하고 가입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그러면 이렇게 낮아라고 하면 그건 아닐 거다라는 거고요. 이 부과 징수 체계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날 거다. 이게 2018년과 2024년 그림인데요. 이 사업장 가입자는 가입 보험료 부과 상한이 넓어지면 그대로 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지역 가입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p> <p>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격 관리와 부과 징수 체계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차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이 급여 사각지대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차이가 단순히 그냥 급여 차이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명목임금 상승률과 a값 상승률이 차이 나는 그런 괴리를 발생시키고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 수준도 제약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p> <p>그다음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누적이 돼서 이제 급여 사각지대로 나타날 텐데요. 이미 급여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5세 노령연금 수급률 보시면 47.1%에 불과하고 급여 수준도 61만 원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수준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노후 소득의 수준과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냐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p> <p>5차 재정 계산의 제도 변수 가정을 보시면 앞으로도 사각지대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수 가정이라는 게 향후 이제 재정 추계를 하기 위해 제도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가정이면서 경제 전망인데요. 이걸 보시면 지역가입자 징수율도 조금 높아지다가 이제 한 77.7% 수준에 그냥 유지될 거고 그렇게 돼서 결론은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 비율이 경제활동인구 대비 해서 한 82.2% 수준으로 쪽 유지될 거다 이런 가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p> <p>앞으로도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급여 사각지대는 좋아질 거냐라면 그렇지 않다. 노령연금 수급률도 한 82% 정도 급여 수준도 a값 대비 한 30% 수준, 평균 가입 기간도 2080년 가봐야 27.3년 그 수준의 이제 고착화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포괄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구조적 격차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냐라고 하면 결국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p> <p>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정부가 아무 노력을 안 했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펼쳐왔고 적용 대상도 확대했고 보험료 지원도 확대했고 크레딧도 확대했고 자격 관리 강화도 했죠.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사실은 좀 많이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딧 같은 거 그리고 보험료 지원 같은 것도 가입 기간, 지원 기간, 지원 수준, 대상 측면에서 다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p> <p>그리고 보험료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보험료 지원 재정이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4년 동안 연평균 보험료 지원 재정이 이제 8.4%씩 감소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동안에 연금개혁 논의에서 얘기했던 원론적인 대책도 충분히 집행되기 어려운 구조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p> <p>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크레딧, 보험료 지원 제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게 그동안 좀 부족했고 여전히 부족한데 돌봄 같은 경우</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그동안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할 때 좀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크레딧도 좀 확대돼야 되고 지역 가입자에 대한 이제 보험료 지원도 좀 확대될 필요가 있죠.</p> <p>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징수율이나 가입 유지 효과에서 사업장 가입자와 다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동시에 좀 추진하긴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릴 구조적 개편과 함께 실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p> <p>제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말씀드릴 게 두 가지인데 가입 구조를 좀 개편해야 된다. 그동안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가입 구조라는 게 연령, 소득 활동, 혼인 여부 같이 복합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가입자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필요한 행정 비용도 발생하고 자격 관련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너무 많다. 그래서 가입 구조도 단순화하고 적용 범위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가입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 1인 1가구 체계에서 이제는 진짜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p> <p>그리고 더 중요한 게 저는 이 부과 징수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소득 기반 사회보험 체계로 전환과 이제 맥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소득 과약률을 높이고 소득이 발생할 때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p> <p>물론 이렇게 하려면 이제 자격, 부과, 징수 체계 전반을 다 재설계해야 되는 거죠. 보험료 징수도 국세청으로 이관해서 징수율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뭔가 크게 바꾸지 않으면 사각지대 문제 크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p> <p>이제 마지막으로 추가 논의 사항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보험료 지원을 확대 한다거나 크레딧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자격 구조를 다 전반적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보편적 포괄성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들은 많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편적 포괄성 확보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운영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 역시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은</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p> <p>우리가 어떤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 보장을 전제로 하면 사실 기초연금이나 기초소득 같은 걸로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재정 투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제 국민연금을 (청취 불가)해서 하는 게 좀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p> <p>그다음에 재분배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포괄성과 급여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간의 상충관계라는 게 결국 a값을 매개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분배 기능을 좀 조정해서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분배는 조세로 좀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p> <p>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편적 포괄성 논의할 때 재분배 구조 a값을 좀 조정하는 방안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저소득층 급여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할 테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논의해 가면서 봐야겠고 그래서 신중하게 좀 검토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논의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p>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 발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김신영 위원님</p>
김신영위원	<p>김신영입니다. 이 모임에 계속 참여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국민연금 슈퍼 연구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슈퍼 울트라 슈퍼 국민연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오늘도 역시 공부 많이 했고요.</p> <p>발표자님께 여쭙보고 싶은 건 먼저 우리 김 박사님께 한번 여쭙보고 싶은 건데 이제 결국 어떤 논리 구조를 그렇게 해 나가냐는 결국 최초의 어떤 언어를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문을 보고 제가 들으면서 놀랐던 것은 이제 공적 연금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보편적 포괄성으로 단어가 이전이 되게 되고 마무리는 재분배로 가시더라고요.</p> <p>그래서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질문을 좀 구체화시켜 보면 공적이라는 말과 보편적이라는 말은 절대 같은 말은 아니죠.</p> <p>훨씬 더 영어로도 다르고요. 이 단어 자체는 의미를 하는 말도 다릅니다.</p> <p>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보편 선택의 구조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그러나 소위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회과학을 연구를 하는 사람</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들에게 항상 지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언어의 모호성 개념 정의도 불분명하고 조작적 정의도 불분명한 그리고 만인에게 모두 좋은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편이나 포괄 이런 단어가 아주 대표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뭐라고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p>질문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p>
김신영위원	<p>그래서 제 질문은 무슨 보편적 포괄성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내신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연결이 돼서 근원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국민연금은 과연 보편적이어야 되는가 모든 것은 다 보편적이어야 되고 모든 것은 모든 국민을 다 포괄해야 되고 이유가 뭔가 도대체 여기에 대한 도덕적 이유, 윤리적 이유, 기술 가치적 이유, 합리적 이유 뭐라도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p> <p>그리고 아니면은 최소한 국민연금 연구자들에게 좋다. 덩치가 커지면 그렇게라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김도형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노인 빈곤율이나 이런 용돈 연금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인 거죠.</p> <p>그래서 이제 제목으로 뽑고 사진으로 뽑고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소득 대체율 인상을 주장을 하고 어떤 분들은 사각지대 해소를 주장을 하고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주제에 맞는 실증 연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무엇에 영향이 더 컸던가 과연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을 낮은 수준의 연금 수급액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과연 낮은 소득대체율이었던 건지 아니면은 사각지대 가입 기간의 문제였던 건지 무엇의 가중치가 더 클 것인가 한번 교수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p>
주은선위원장	<p>네 답변해주시죠. 류재린 박사님.</p>
류재린위원	<p>네 그 보편적 포괄성은 제가 의도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국제적으로 통일된 그냥 개념입니다. 이거는 공적 연금이 목표로 해야 되는 개념 중의 하나로 월드뱅크나 ILO나 다 정리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공적 연금이 가져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유니버설 커버리지 라고 해서 이렇게 모든 국민을 보편적으로 포괄해야 한다. 물론 그런 의미 담고 있습니다만 가입자들이 적어도 가입 대상으로 적용돼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보편적으로 포괄해야 된다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 보편적 포괄성 개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p> <p>이건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의도해서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유니버설 커버리지의 목적은 모든 국민 우리 사회 모든 국민을 포괄하자 그게 아닙니다.그</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제도에 포괄돼서 이 제도가 법적으로 목표로 하면 그 사람들은 다 포괄되어야 한다.</p> <p>그리고 이 보험료 부과 징수 체계에서 다 가입자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기여를 쌓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서 노후 소득 빈곤해지는 걸 방지하고 생애 소득을 평탄화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가입자들의 가입 이력이 격차가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편적 포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고요. 충분히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p>
김도형 위원	<p>네 저는 노인 빈곤 근본 원인 관련해가지고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이게 제도가 너무 늦게 도입됐다. 국민연금이 사실은 74년에 국민복지연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도 다 제정이 되고 거의 실행 직전 단계까지 갔었는데 결국에 좌초되고 그게 1988년에 들어오는 것이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88년에 들어오고서도 당연 적용이 완전히 되기까지는 2004년 그러니까 16년이 더 걸렸습니다.</p> <p>그래서 이 문제가 누적이 돼가지고 노인 소득 빈곤 그러니까 노인들이 소득이 없어지는, 다른 형태로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p> <p>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사실은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없고 과거에는 더 높았죠. 훨씬 더 높았고 이게 낮춰진 것으로도 이미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에서 사실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많은 60에서 64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충분히 가입 기간을 늘려가지고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지 않고 이번에 2025년 국민연금법 통과될 때 소득 대체율을 인상한 것이 약간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p> <p>그래서 오히려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59세 납입 연령을 인상을 하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1960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지금 더 이상 용돈이라고 보기에 좀 많은 수준으로 이미 올라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최근 신규 수급자 수급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류재린 위원	평균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1만 원 수준인데 이 남성과 여성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주은선위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박명호 위원장님.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박명호위원장	<p>네 우리 류재린 위원이 발표해 주신 자료 13페이지 이제 국민연금 적용 체계의 도식이라고 해가지고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을 해가지고 궁금한게 있어서요.</p> <p>발제 자료 39페이지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가입 구조 단순화 및 적용 제외 범위 최소화가 필요하다면서 적용제외자의 47.2%가 소득 자료를 보유하고 이 중 48.8%는 월소득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우리 유희원 전 위원님 자료를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요.</p> <p>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지금 소득이 없는 자들이 적용 제외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직역 연금 등 수급하는 사람들이 적용 제외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유배우자이면서 적용 제외자가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적용 제외라고 하는 사람들 중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실 때 48.8%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직역연금 가입자들은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왜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는지, 왜 적용 제외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p>
류재린위원	<p>예 설명 드릴게요. 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 소득의 정의와 소득 파악의 시차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지금 현재 일자리에서 소득이고 근데 소득 파악은 이 다음 해나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2년 뒤에 이 사람이 공적자료로 소득이 파악이 돼서 부과하려고 하면 그러면 미안한데 그거 2년 전 소득이고 지금은 소득이 없습니까라고 하면 소득이 없다고 판명이 되는 겁니다.</p> <p>그래서 이제 공적자료는 소득이 뒤늦게 파악이 되지만 이제 그때 당시 자격 기준으로는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적용제외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p> <p>두 번째는 적용 제외자는 아예 이제 공단에서 자격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p> <p>그래서 이제 소득 파악이 나중에 돼야만 그래 이 사람이 적용제외자인데 나중에 보니까 2년 전에 적용 제외자인데 소득이 있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희원 박사님 이 자료가 제가 공단에 있을 때 같이 분석한 거예요. 뒤늦게 소득으로 봤더니 적용제외자의 87.2%가 그때 당시 적용제외자였는데 소득이 실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뒤늦게 파악한 겁니다.</p>
박명호위원장	<p>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하는 통상적인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근로자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특수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가요?</p>
류재린위원	<p>그럴 수도 있고요. 적용 제외자였는데 취업을 했을 수도 있고요.</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이제 물론 사업장 가입자로 취업하면 거의 대부분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공식 영역에서의 소득 활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잘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네 박철언 위원님</p>
<p>박철언 위원</p>	<p>네 박철언입니다. 넓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좀 좁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레딧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p> <p>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김도형 위원님께서 발제 마지막에 제도 외적인 목표를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셨고, 출산과 실업 크레딧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연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건데 이게 왜 제도 외적인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냐는 어떤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한번 방어 논리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류재린 위원님께서 이제 크레딧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논의가 전부 끝난 이후에는 하반기에는 보고서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p> <p>보고서에 이제 크레딧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는 이 크레딧이라는 게 들어온 게 정책 결정자에게는,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어떤 보여주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이기 때문에 크레딧이 도입이 된 게 아닌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기 전에 사회 정책 관련된 많은 학술지를 찾아봤는데 2024년이나 2025년의 설문조사를 보면은 젊은 세대 기준으로 크레딧에 대한 효용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후세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p> <p>그러니까 크레딧을 가지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그 논의가, 사실 그 카너면의 행동 경제학을 굳이 들고 오자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큰 이익보다는 현재의 확실한 이익을 선호하고 확실한 작은 손해보다는 불확실한 큰 손해를 선호합니다.</p> <p>그러니까 당장 지금 나에게서 연금 빠져나가는 그 돈을 싫어할</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텐데, 미래의 크레딧을 통해서 미래의 혜택을 조금 더 주겠다고 해서 과연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p> <p>저는 크레딧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차원으로서, 물론 당장 이거를 폐지하자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걸 확대하는 거는 굉장히 정책 효과적으로 수리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정책 대상자에 대한 어떤 수혜 집단에 대한 효용감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능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한테도 질문하신 거죠? 예 김도형 위원님 먼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p>네 저는 출산 크레딧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거는 이제 사실은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나라도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서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 혹은 가족 정책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애를 더 많이 낳아라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부 정책이니까 당연히 정부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p> <p>실업 크레딧 같은 경우도 이거를 공적부조로 본다.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예를 들면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예를 들면은 정부가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적부조 제도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정부 그러니까 예산으로 해야되는 일인데 이거를 지금 다 기금에다가 떠넘기고 있는 하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떠넘기고 있고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전적립도 안 하고 있다.</p> <p>이거를 그냥 나중에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하게끔 지금 설계가 돼 있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류재린 위원님.
류재린 위원	네 박철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랑 사실 제가 크레딧을 이해하고 있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크레딧을 사회적 기여에 부여하는 그런 가치를 부여해서 제 노후 소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심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연금 차원에서 기여를 인정해 주는 제도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상한 우리나라가 크레딧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p> <p>그래서 아까 김도형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정부가 일반 재정으로 크레딧에 대한 가치가 바로 발생할 때 그때 가입기간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걸 다 미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박철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자한테 다가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도 나중에 급여 지급할 때 되니까 다 남성한테 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p>
주은선위원장	근데 질문하셨던 것 중에 박철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크레딧이라는 것의 가입유인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되신 걸까요?
류재린위원	네 그것도 답변 조금 추가해서 드리자면 직접 바로 심어주면 당연히 가입 제고 효과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가입 기간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부과해서 10년을 채우는 것과 출산 크레딧으로 한 5년 정도 딱 줄어든 상태에서 5년 추가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박철언위원	<p>그러니까 직접 바로 심어주신다는 게, 제가 그래서 행동경제학을 말씀드린 거예요. 수급 연령이 지금 65세부터인데 출산이면은 보통 이제 가입기 여성이 20대 30대 분들이고 군 복무는 20대고 30~40년 이후의 얘기잖아요. 그게 굉장히 효용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p> <p>그거 바라보고, 왜냐하면 이 크레딧 얘기를 드리는 건 이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청년층이 바닥이라는 그 여론 하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너희들 이제 정책에 거부 없이 순응해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유인이 낮다, 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레딧이 굉장히 매력적인 유인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p>
류재린위원	저도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그런 효과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걸로 제도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건 아닌데 가입 시점, 가입 이력을 쌓아가는 데서 출발 지점을 좀 높여주는 효과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각지대 해소라든가 급여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은선위원장	네 김신영 위원님.
김신영위원	네 저 갑자기 궁금한데 이거는 출산 크레딧이네요. 출생 크레딧은 아니고 그건 아직 안 바꾸는 모양이네요. 아무튼 출산 크레딧하고 군복무 크레딧에 있어서 성평등가족부가 뭐라고 안 합니까? 그건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왜 남자들만 여자들도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어떤 리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또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여성들이 무슨 애 낳는 도구냐 또 뭐 장려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군복무 크레딧에서는</p>
주은선위원장	<p>출산 크레딧의 이유라든지 존립 이유라든지 정당성에 대해서는 류재린 박사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p>
김신영위원	<p>아니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 그거 왜 남자들만 주는데 왜 성평등가족부에서</p>
정해식위원	<p>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출산 크레딧은 여성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출산 크레딧은 그 가구에 주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출산을 한 여성이 무급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남성과 여성일 경우에 지금 남성이 대부분 크레딧을 가져가고 있다. 아까 류재린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산크레딧과 관련해서는 성별의 문제는 나중에 가서는 여성이 다 가져가는 걸 좀 우리가 유도는 하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p>
김신영위원	<p>출산이란 행위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녀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뭐 그런 얘기는 없는 거죠. 군복무 크레딧이나</p>
류재린위원	<p>출산도 그렇고 군복무도 그렇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 그냥 기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p>
주은선위원장	<p>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인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정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출산 크레딧의 90% 이상은 남성들에게 부여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시정해 나갈 거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명호 위원장님</p>
박명호위원장	<p>저는 그런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두 분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정형 근로자들의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른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그들한테 인센티브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올해만 하더라도 82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인 가구 한도가.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 조금 조금씩 가입을 해봤자 나중에 생계급</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여 안에 보충성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데 굳이? 다시 말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것 자체가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도덕적 회의를 작동하게끔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보장 체계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비정형 근로자들의 사각지대 문제 해소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p>
주은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p>이게 사실은 나는 그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한 회피하다가 나중에 기초연금 수급이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금 받아봤자 나중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떼인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은 국민연금이 정말 급여가 낮아가지고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발생한 오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연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금방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p> <p>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사례를 보면은 그거 사실은 거기에 생계를 의존하는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급자 비중으로 보면 그래서 보장 수준은 이제 우리나라나 소셜 시큐리티나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정형 근로자들 자영업자들 이쪽에 어쨌든 소득 파악하는 정부의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p>
주은선위원장	류재린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류재린 위원	<p>네 저는 두 분 말씀에 다 굉장히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또 그런 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층 체계를 좀 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다층 체계에서 제도 간 정합성을 맞출 때 그런 부분들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률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다층 체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p> <p>또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너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자가 지금 굉장히 적고, 적은 급여를 받고 있고 수도 적은데 늘어나면 이게 기초연금을 받을지언정 못 받을지언정 국민연금을 내가 써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좀 빨리 확산되는 게 이 제도 성숙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p>
주은선위원장	송헌재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송헌재 위원	<p>류재린 위원님께 질문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보편적 포괄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서는 부과 및 징수 경로의 차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역 가입자들</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에 대해 개별납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느냐 생각해보면 (청취불가)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쪽 주신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제 소득이 좀 더 투명화되면 좋겠다.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해할 때는, 이거는 우리 (청취불가) 소득 세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과약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랑 똑같은 얘기거든요.</p>
<p>주은선위원장 송헌재위원</p>	<p>위원님 조금 가까이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죄송합니다. 결국 오랫동안 나왔던 소득 과약의 문제여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을 과약할 때 세금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청취불가) 반대 소득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소득 과약을 했잖아요. 혹시 여기에서도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없는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가 없는지 하나 궁금하구요.</p> <p>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이제 뭔가 현재 약간 김도형 위원님께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이 되게 노후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내가 나한테 받을 걸 예측을 하면 지금 소비가 늘어날 거거든요. 이걸 최근에 했던 연구여서 좀 이용할 법도 하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는 뭐냐 하면 내가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는 가구에서 지출이 늘더라고요.</p> <p>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을 이 연금액을 늘려주는 것만이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연금액이 늘어나면 지금 현재 저축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질문 하나씩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류재린 위원님에 대한 질문해 주시면서 소득기반 사회보험 제안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도 좀 관련해서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류재린위원</p>	<p>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영자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지금 단계에서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재작년부터 실시간 소득 과약 체계 관련해서 사회보험 전반이 그게 가장은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고용보험이 노무 제공자부터 시작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제 같이 참여해서 많이 논의했었는데요. 지금 사실 상당히 자영자나 아니면 노무 제공자에 대한 소득 과약은 사실 일용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p> <p>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3.3% 인적 용역에 대해서 빼듯이 그때부터</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전반적으로 빨리빨리 그렇게 가능한 사람부터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부터 빨리빨리 원천 징수하는 방향으로 가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가면 원천 징수 방식으로 바뀌어서 구조적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영업자가 자기 필요 경비 빼고 소득 하위 신고 그거를 어떻게 잡아낼 수는 없는데 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서 그걸 좀 막아보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p> <p>연금액이 낮은 거 그건 김도형 위원님께 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일부 자기 연금액이 나중에 충분해서 이제 지금 소비를 늘리는 그런 행태가 나타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사람은 지금은 굉장히 극소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전반적으로 급여가 너무 낮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연금제도 충분히 성숙되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우리가 봐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를 걱정하는 게 너무 우리 급여 수준이 낮다라는 생각은 합니다.</p>
주은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p>네 송헌재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게 그러니까는 소득 대체율이 그러니까 국민연금 급여가 너무 크면은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그런 효과를 관찰한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퍼머넌트 인컴샷이 가장 명확했던 게 기초연금이거든요. 근데 기초연금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그냥 소비가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사실은 이거는 연구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p> <p>그다음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만약에 너무 높아지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보면 저도 이제 구축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으면은 개인연금을 더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축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 비중이 너무 커져버리면 사적인 그런 수단들이 구축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는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p> <p>그래서 다층체계를 이제 사람마다 이제 노후에 원하는 소득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한 30~40%를 깔아주는 시스템이 되고 거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얻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개인들 입장에서 최적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p>
주은선위원장	네 박종상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고요. 신승룡 위원님 그다음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박종상 위원	<p>에 하도록 하시죠.</p> <p>네 두 분 말씀을 잘 들었고요. 특히 미리 발표 자료가 나와서 읽어볼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류재린 위원님에 대해서 코멘트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질문도 하나 있고요.</p> <p>그다음에 김도형 위원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류재린 위원님 자료가 이 급여 사각지대라는 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생애 전반의 가입과 그 실패가 누적된 결과다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7페이지를 보시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급여수준이 낮은 상태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게 적용 사각지대의 결과다.</p> <p>사실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급여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한 다라는 처방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급여 사각지대가 벌어진 이유는 적용 사각지대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p> <p>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높이게 되면 오히려 특정 집단에게만 그 혜택이 몰릴 수가 있고 이런 건 오히려 보편적 형평성에는 오히려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p> <p>그래서 그거보다는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을 오래 가져가고 그다음에 충분히 많은 보험료를 내게 만드는 구조 보험료율 인상이 되겠죠 그게 우선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가 읽은 행간이었습니다.</p> <p>그다음에 질문은 그래서 급여 사각지대가 적용 사각지대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미 발생해버린 빈곤 노인층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걸 동의하시는지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제 기여 기반으로 가고 복지 기능은 타 제도로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한 의견이 세 번째 궁금합니다.</p> <p>그다음에 김도형 위원님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료율 인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보험료율 인상이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유희원 위원님께서 제가 계속 쫓아서 여</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쫓봤더니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국민연금의 모습도 그렇고 이번에 작년에 새로 개혁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장기 재정은 오히려 계산에 따라서 오히려 악화되기도 했었잖아요.</p> <p>그 상황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재정적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율 인상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고 지난번에 약간 맥락은 달랐지만 유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여쭙봐서 여기서 균형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재정 악화를 막고 그러니까 세대 간 수익기를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연구를 하시면서 균형 보험료율에 대해서 시사를 해보신 게 있는지 지금 13%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점점 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몇 퍼센트까지 올리는 게 이제 균형 보험료율이라서 이렇게 되어야 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걸 시사에 보신 적이 있는지 이제 궁금합니다.</p>
주은선위원장	질문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서요. 좀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승룡 박사님 질문 같이 해 주시죠.
신승룡위원	<p>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기 류재린 박사님 슬라이드 5쪽에 국민연금의 틀릴레마 그림이 있는데요. 에디퀸시, 유니버설 커버리지, 피스컬 서스테이너빌리티 마치 대등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는데 사실 오늘도 저는 2050년 제 입장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피스컬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지켜지지 못할 때 어차피 2050년 입장에서 에디퀸시 달성할 수 없는 거고 더 안 좋은 상황에서는 유니버설 커버리지 또한 이렇게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그림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p> <p>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꼭 국민연금을 통해 해야 되는 건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개인 계좌제를 통한 해소는 안 되는 건지 그 이유가 소득 재분배 기능인지 종신형 연금 때문인지 궁금하고요. 그 답변이 2050년생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지금 질문에 대해서 류재린 박사님
류재린위원	먼저 박종상 위원님 말씀하신 기초연금을 오르도록 유도한 지금의 고령자 더 나이 든 사람한테 타겟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질문을 이해했는데 저 너무 동의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했고요. 목표 수급율 70%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옛날부터 주장했거든요. 저소득층한테 더 타겟팅 해야 된다고 말씀드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렸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세대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면 기초연금을 타겟팅 했을 때 급여 수준이 훨씬 높아야 됩니다.</p> <p>지금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 40만 원 이 수준 택도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타겟팅 할 거면 한 80만 원, 90만 원까지도 올려서 타겟팅해서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p> <p>두 번째 신승룡 위원님 이 그림 대등하지 않다고 비판하셨는데 이 목표들 중에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렇게 대등한 걸로 그려 놓은 것은 저는 그만큼 보편적 포괄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p> <p>우리가 국민연금에서만 꼭 사각지대 해소해서 급여를 줘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 계좌제를 하건 될 하든 간에 그 제도가 어느 정도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으려면 그 제도에서도 포괄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전체 노인의 한 50%만 혹은 70%만 개인 계좌제로 이 급여를 받는 그런 걸 상상해 봤을 때 나머지 그림 뭘로 채울 거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p> <p>그러면은 우리가 국기초나 기초연금 같은 걸로 다 채워줄 거면 그것보다는 지금부터 가입하게 해서 국민연금 최대한 성숙시키는 게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뭐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p>
주은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도형 위원	<p>네 수치 균형 보험료율은 제가 공단에다가 요청해가지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p> <p>그래서 저희 공유된 거 보시면 아실 텐데 아마 제 기억에 한 20% 정도 했던 것으로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율을 그 근방으로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냐, 빨리 올릴수록 사실은 기금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p>
주은선위원장	남찬섭 위원님 그 사이에 발언하실까요?
남찬섭 위원	류재린 박사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사각지대가 되게 취약 계층이 이니까 이분들 사각지대 해소를 하게 되면 큰 걱정 중에 하나가 a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히 높고 그다음에 사실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전과 행동이 달라진 게 없는데 급여가 내려가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있어야 사각지대 해소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 대책이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p> <p>그다음에 소득 기반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시간 소득 파악해서 그렇게 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떠나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에 문제는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부과 할 건가 그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하고요.</p> <p>그다음에 김도형 교수님한테 질문드릴 게 있는데 지금 사각지대 문제가 노동시장 같은 거시적인 변화의 문제여서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시게 되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교수님 분석하신 것처럼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예를 들어서 두루누리 같은 경우에 3년 한정해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 효과가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p> <p>그래서 굉장히 거시적인 어떤 변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폐지하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노동시장 정책이나 거시적인 정책과 연결시켜서 하는 오히려 좀 범부처적인 그런 대책으로 오히려 발전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p> <p>그다음에 지금 60세 이상 지금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하고 가입 연령이 맞지 않고 이제 (청취불가) 그런 상황인데 60에서 64세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고용률은 높지만 의무 가입이 아니다 보니까 빠져나가 있는데 이 분들을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60세 이상 고용된 분들 중에는 비정규직이 70%가 넘어가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비중이 제일 많거든요.</p> <p>그러면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은 사실은 가입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는데 그러면 양쪽 방향이 상충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한편으로는 폐지한다고 그러면서 60에서 64세는 비정규직이 70% 넘어가</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는데 보험료를 올리면서 그분들을 가입 의무가 지키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 해소가 안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조금 좀 오히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어떤 거시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나 어떤 그런 정책으로 연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p>
<p>주은선위원장</p>	<p>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윤석명 위원님 그 사이에 질문 신청하셨습니다.</p>
<p>윤석명위원</p>	<p>자문위원 윤석명입니다. 두 분 발제 자료를 사전에 보면서 제가 대충 써봤습니다. 박종상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균형 보험료는 제 기억으로는 소득대체율 43%에서는 22%가 넘어가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p> <p>그다음 코멘트를 하기 전에 아까 신승룡 박사님이 ‘트릴레마’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영숙 박사님이 작년에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에 지금 우리의 기초연금제도는 5년마다 A값의 한 10% (11.8% 수준인가로?) 연동을 시키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p> <p>그렇게 되면 (1년 지출액이) 한 120조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p> <p>이제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김도형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2021년인가? OECD 펜션 익스퍼츠 미팅(OECD Pension Experts Meeting)에서 저하고 정반대 내용의 발표를 했어요.</p> <p>저는 두루누리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김도형 박사님은 이거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보다, 뭐냐 하면 계속 지금 재정안정화 조치는 안 하면서 보험료 지원 쪽만 너무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보험료 지원 사업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쪽으로 저는 중간지대로 (입장이) 옮겨갔고요.</p> <p>2021년의 OECD Pension Experts Meeting 때에도 굉장히 부딪혔던 게, (저는) 두루누리 보험 사업에 효과가 없는 건 타겟층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집단들한테 보험료를 보조하는 제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없었다는 거죠.</p> <p>그런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되 지금 장기간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점에서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류재린 박사님 관련 발표와 관련하여서는 (류박사님이) 저하고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보사연 보고서에서 연구를 했습니다.</p> <p>그런데 저는 큰 걸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떤 분들은 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만약 축소해 나간다 그러면, 그게 구조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p> <p>그래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청년층 대상으로 아니면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서 사각지대가 만약에 줄어들었다면 그걸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구조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 건지!!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쭙보는 겁니다. 그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정해식 위원	<p>연결해서 김도형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아까 이제 60세에서 64세 가입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좀 의견을 여쭙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60에서 64세는 임의 가입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p> <p>근데 이제 김도형 교수님께서 그런 임의성에 대해서 또는 보험료 지원을 해가지고 가입을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어쨌든간에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의무 가입하도록 연령을 조절하는 게 본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예를 들면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됐으면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은 이분들한테 보험료 지원을 하면서 또 이제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거든요.</p> <p>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또 산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아예 확정적으로 법적인 가입 대상을 정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질문이 좀 추상적인데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p>
주은선 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먼저
김도형 위원	<p>네 그 질문이 많아가지고 듣다가 또 앞부분을 잊어버려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사업장 가입자 그림 보시면은 사업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률이 지금 거의 90% 가까이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상당히 해소가 됐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직 가야될 길이 멀지만은 이거는 가입률 추세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보조금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그냥 매년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거든요.</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저는 이거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득 파악 노력 이런 것들의 결과지 이게 보조금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은선위원장	먼저 류재린 박사님 대답하시면 그 사이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린위원	<p>네 먼저 남찬섭 교수님 말씀하신 a값 하락의 대책이 뭐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a값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폐지가 어렵다면 그 비율이라도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국민연금 제도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 볼수록 a값에 걸려서 제도 개혁을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a값을 폐지하거나 재분배 기능을 조정했을 때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급여가 하락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거 어떻게 다른 경로 메꿔가면서 좀 a값은 없애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p> <p>두 번째는 소득기반 사회보험 할 때 사용자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사실 거의 노무 제공자나 인적 용역자 등에 대해서 이제 주신 말씀 같은데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종속성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무 제공자나 인적 제공자가 있을 때 소득의 몇 % 이상 한 70% 이상 특정한 사용자한테 귀속된다. 혹은 특정 플랫폼에 귀속되면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사용자로 간주해서 보험료 부과 의무를 주는 거거든요.</p> <p>그런 식으로 좀 하면 사용자 책임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이제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좀 옮겨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윤석명 박사님 말씀하신 보험료 지원이 구조 개혁이나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저도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구조적으로도 이 보험료 지원이나 크레딧 전환 확대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좀 전반적으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럼 그 정도로 같음 하겠습니다.</p>
김도형위원	<p>두 번째 질문은 일단은 사각지대 그러니까 만약에 연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고령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우리가 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아예 당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얘기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생긴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p> <p>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임의 계속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라고</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러면은 이제 뭐 그냥 신뢰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를 해가지고 소득이 있으면은 거기에 보험료가 부과가 돼야 되고 부과가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큰 원칙이고 그다음에 지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적정성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생각입니다.</p> <p>그리고 윤석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타겟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식의 타겟팅을 예를 들면은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p>
윤석명 위원	<p>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하고 연동해서 그 수준까지 (월급 받는 근로자에게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타겟층이 잘못되었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양반들이 사업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있는 집단이었다는 겁니다.</p> <p>반면에 원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사업은 자기 혼자서 (보험료) 100%를 부담해야 되는 저소득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 지원을 하자고 그랬는데 정치적 논리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자영업자는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노조가 있고 노사정 합의하면서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집단한테 이 보험료 지원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타겟팅이 잘못됐다고, 그때 (OECD Pension Experts Meeting) 당시 ADB나 ILO, OECD 쪽에서도 온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p> <p>두루누리라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보다는 타겟팅이 잘못됐으니 그런 쪽으로 이 제도를 좀 고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맥락입니다.</p>
김도형 위원	<p>네 일단 두루누리 사업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도 사실은 제 발표를 이제 못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p>
윤석명 위원	<p>아!! (사전에) 읽어봤습니다.</p>
김도형 위원	<p>한 가지는 이제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저소득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누가 저소득인지를 지금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 가지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근로자들도 사실상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귀착이 그렇게 되어 있기</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때문에 법적 귀착은 50%지만 실제로 다 내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자가 100% 부담하니까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경제 현실과는 맞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일단은 질문하실 질문. 발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김학주 위원님하고 김대영 위원님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p>
<p>김학주위원</p>	<p>두 분 발표는 오늘 아침에 미리 모두 읽어봤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p> <p>노동 시장의 구조 변화로 인해 기존 가입체계만으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저 역시 적극 동의합니다.</p> <p>생산 인구 감소와 동시에 수급자 증가는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지출의 구조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류재린 위원님에 대한 질문일까요?</p>
<p>김학주위원</p>	<p>아니. 두 분 모두께 해당되는 질문입니다.</p> <p>또한 현재 논의되는 중장년층 가입자 확대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수입 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급여 지급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그 재원은 미래 청년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으로 어떤 방안들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류재린 위원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잠깐만요. 잠깐 제가 김대영 위원님이랑 묶어서 질문받기로 했는데 헛갈렸어요. 죄송합니다.</p>
<p>김대영위원</p>	<p>예 김대영입니다. 사실 좀 제 생각을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출산이나 군복무 크레딧이 이번에 막 이렇게 추가된 것들은 사실 소득대체율 올린 거 합리화하려고 우는 애한테 사탕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50년생한테 물어보면 이거를 차라리 안 받을 테니까 소득대체율을 원상복구시키라고 하겠지 누가 이걸 받고 싶겠습니까?</p> <p>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이 크레딧이 그냥 단순하게 군복무, 출산 여기에 다 묶어서 얘기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노동 시장 형태의 변화를 짚어주셨는데 그 노동시장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한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과 더불어서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영세 사업자들이 고용을 안 늘려요. 고용도 안 늘리고 늘리려고 해도 서로 안 좋아하니까 프리랜서로 자꾸 신고를 합니다.</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지금도 더군다나 점점 이 정책들이 노동 친화적으로 가는데 결국에 이 양성화하는 것들은 사업주들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메리트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에서 사업주 부담분을 변제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메리트를 줘서 왜냐하면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 한 명 고용하면 이 사업주는 자기 거 100% 내고 근로자 거 50% 내주면 사실상 3배 더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더 파격적인 정책적 메리트가 오히려 그쪽에 집중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구요.</p> <p>근데 이제 김도형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듯이 간이 과세 범위 확대하는 이런 거꾸로 가는 정책들을 자꾸 펼치니까 이거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진짜 답답합니다. 간이과세 범위도 계속 개정돼 그리고 일부는 또 납부면제 해서 부가세를 받지만 부가세 한 푼도 안 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꾸 정책적으로 생기게 만들거든요.</p> <p>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너무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거꾸로 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 그나마 질문드릴 만한 게 류재린 위원님께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을 하는데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밑에 기재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p> <p>그리고 징수 체계를 국세청 중심으로 하자고 하는데 지금도 국세청 세법 매년 이렇게 뜯어 고치고 누더기 만들어 가지고 죽을라 하는데 이것까지 어찌면 이게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봐서 이게 어떤 구상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상을 해 보신 건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이 질문에 대해서 한꺼번에 그러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류재린 위원님부터
류재린위원	<p>네 먼저 김학주 위원님 말씀하신 수익 대비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를 (청취불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적용 사각지대에서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p> <p>두 번째는 제가 질문을 맞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의 어떤 재원을 국민연금에 지원해가지고 그게 어떤 청년층의 부담으로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신 걸까요?</p>
김대영위원	네.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류재린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어떤 보험료 지원 제도라든가 크레딧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가입 가능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 세대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물론 나중에 우리가 재정 구조가 그래서 청년들이 아예 급여를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별로 와닿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재정 안정화 우리가 (청취불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 어쨌든 청년층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발언자미확인	그건 재정 안정 개혁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류재린위원	<p>저희가 그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면 당연히 재정 안정성을 높여가야겠죠. 근데 우리가 재정 안정성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제도를 쭉 가져갔을 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청년들에게 불리하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어쨌든 제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지금 사각지대 해소해 나가고 그러면 그게 청년들에게 그렇게까지 불리한 제도인가 그렇게 아니게 만들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p> <p>그다음에 김대영 위원님 질문하신 거는 제가 이 워딩을 좀 약간 오해하게 써놓은 측면이 있는데 사실 시스템에서 소득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게 연동돼서 자격 관리와 부과 징수 체계까지 다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두어 본 거고요.</p>
주은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p>네 김학주 위원님 질문이 제가 보기에 중장년이 만약에 가입을 더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그게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그 모든 이런 효과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계리적으로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 악화 때문에 납입 연령을 인상하지 못한다 계속 이런 것이 반복돼 왔어요.</p> <p>이거 납입 연령 연동하자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보험료율 수준이 만든 왜곡이 또 다른 왜곡을 낳고 그것이 적정성을 해치고 그 다음에는 근로 패턴이 생애 주기 패턴이 변화하게 되면 이제 더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식의 이제 효과를 낳기 때문에 이게 보험료율이 진짜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 납입 연령을 인상하는 거는 오히려 그냥 너무 당연하고 합리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p> <p>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험료율 인상하고 부족</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한 부분은 국고 투입을 하든지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죠. 근데 방향은 이게 맞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윤석명 위원	<p>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일부만 조금 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p> <p>김도형 위원 발표 관련해서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늘 주제가 사각지대 해소나 축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현재 운영하는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쪽으로 확정되기 전에, 저 같은 사람이 (처음으로 도입 필요성 주장을 하다보니) 기재부에서도 수차례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당시 기재부 담당과장이 현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었음) 그때는 주된 타겟 파플레이션 (Target Population)이 저소득 자영자였습니다.</p> <p>근데 이 양반들, 즉 저소득 자영자들이 정치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변질이 되면서 다른 쪽으로 (홀러)갔다는 거죠.</p> <p>그래서 최소한 사각지대 축소 차원에서는 지금처럼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한테 지원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자한테 하는 게 사각지대 축소에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였고.</p> <p>아까 말씀드린 김에 이제 크레딧 관련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는 군복무 크레딧을 출산 크레딧처럼 전 기간 다 제공하자는 주장을 했었습니다.</p> <p>예전에는 병사 월급이 30만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200만원인 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왜 이분들한테 크레딧을 제공합니까? 월급을 이 정도로 꽤 많이 주니까 이제는 이 양반들한테도 매칭 펀드 형식으로 차라리 두루누리 같은 사업을 통해서 가입 유도하는 게 낫지!! 크레딧을 무작정 확대하는 건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같이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김도형 위원	군복무 크레딧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면 사실은 그냥 사용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름을 명칭을 보험료라고 하든지 크레딧이라고 하든지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발생 시점에 문제가 있고 당장 지금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문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류재린 위원	저도 군인 월급 많이 올랐으니까 병사 월급 많이 올랐으니까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칭취 불가) 굉장히 기겁해서 그러면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의미에서 저는 이제 크레딧을 확대한다면 최소한 크레딧 돌봄 크레딧 이쪽으로 확대하는 걸 말씀드리는 그 정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정창률 위원님.</p>
<p>정창률 위원</p>	<p>예 발표 잘 들었고요. 답변 질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길지는 않고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발표 자료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노후소득 보장도 소득 부족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대체율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가입기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p> <p>가입기간이 우리나라가 지금도 20년 초반이고 제도가 성숙해도 20년 후반 정도밖에 안 돼서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나라는 믿기지 않는데 45년 이런 나라들도 사실 있단 말이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우리나라에 아까도 발표에서 나왔지만 입직 연령이 늦은 이유도 있고 또 발표에서 나왔지만 이제 미국에서 64세도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p> <p>어떤 상병 기간 동안에 크레딧을 주는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사업장 가입자나 정규직은 가입률이 높고 비정규나 지역은 낮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미 이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도 이제 특고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한 180만 명 가까이 이제 의무 가입 대상이 됐으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서도 지금은 지역 가입자가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도 사업장 가입 화 해야되는 문제라서 굉장히 중요한 가입대상을 늘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쭙보고 싶고요.</p> <p>그리고 좀 굉장히 모순적인데 우리나라가 생애 가입 기간은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근로자 대비해서는 가입률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아야 하는 그런 포괄성의 목표가 이제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p> <p>이게 100%는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우리가 이 포괄성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가 좀 애매한 질문일 수</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는 있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마이너하게 김도형 위원님 이제 내용 중에 이제 이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강제 가입 제도인데 이탈을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이게 이제 지역 가입자에 한정된 얘기인지 아니면 사업장 가입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네 박철언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p>
<p>박철언 위원</p>	<p>질의는 아니고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레딧입니다. 크레딧에 대해서 아까 류재린 위원님과 제가 나눴던 말씀이 연도 축적하는 등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가치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지금 그 크레딧을 받는 분들이 효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금 정책 효용이 안 나오고 있다하면서 대립을 했는데, 지금 대립되는 와중에 이제 신승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릴레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되려면 재정 안정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 저는 그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받을 돈이 있어야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의미가 있습니다.</p> <p>그래서 지금 구조 개혁, 노동 시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논의는 굉장히 오래 진행이 돼야 할 논의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논의고, 상대적으로 수월한 얘기가 크레딧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에 올라가기가 쉬운 논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크레딧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기금이 됐든 조세가 됐든 기금 채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크레딧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거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p> <p>정책 수혜 대상자들이 크레딧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불신하거나 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 가입 기간을 늘린다는 게 지금 대상자들에게 무슨 효용이 있겠나. 그래서 채원 조달 방안에 대한 매칭이 돼야 크레딧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 드리고 혹시 이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첨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박나리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p>
<p>박나리 위원</p>	<p>저는 김도형 위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보험료 지원 가입 관련해서 이것을 직접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결과랑 이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뒤에 분석의 함의를 뽑아주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과연 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0.66%만 증가시켰다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하려면 잠깐 찾아보니까 방법론은 DID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처치 집단이나 통제 집단 어떻게 설정하셨고 모형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셔</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야 뒤에 합의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p> <p>그리고 또 영세 사업장 근로자 미가입 원인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본 거를 이제 2018년에 있었던 일부 광역 지자체에 이 프로그램을 비교해 주셨는데 이 광역 지자체 프로그램이 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지원 대상자가 좀 다른 게 아닌지 아니면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 고유의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을 텐데 그럼 이런 지자체 관련한 것 통제를 이게 분석 결과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은 통제를 하셨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p>
주은선위원장	류재린 위원님부터
류재린 위원	<p>네 먼저 박철언 교수님 말씀 주신 특고 포괄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특고 포괄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도 몇 번 쓰고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국민연금 DB 가지고 특고의 특성을 분석했을 때 이 사람들이 기준 소득월액 변동이 사업장 가입에 비해 높고 기준 소득월액 수준이 좀 낮았습니다.</p> <p>그래서 제 개인적 선호는 차라리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 집단은 보험료 보충 지원해 주는 게 좀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기 위해 사업장 가입자를 포괄해야 된다고 하면 저 동의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다만 직종별 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천천히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사업장 가입자 포괄하는 것도 결국 사용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p> <p>그러니까 이 특고가 노무 제공자에서 고용보험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험료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때는 사용자들을 어떻게 설득했냐 하면 우리가 이 이 사용자가 특정해서 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를 고용보험에만 한정해서 정보를 쓰겠다. 그러니까 고용보험법에 사용자의 정보를 이제 다른 곳에 쓰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 특고의 사업장 가입자를 전환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p> <p>이 포괄성 목표 저도 굉장히 고민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이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하자고 해서 저는 전 국민이 진짜 1인 1연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이게 좀 위험한 발언 할 수 있는데 노동</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시장에 안 들어오거나 생애 기간 동안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p> <p>근데 다만 그 포션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거에 대해 이제 논의 하자는 걸로 저는 이해했고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이 재정 예산에서 나오는 지금 수급률이 한 82%인데 그러면 한 18%는 포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나 그 래도 다른 나라 봤을 때 한 90% 이상은 좀 포괄하는 방향으로 좀 우리가 끌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박철언 위원님 말씀하신 크레딧의 재원 조달 방안 당연히 필요하 죠.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이 신승룡 위원 님, 박철언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 재정 안정성에 대한 걱정과 판단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재정 안정성 지금부터 보험료 인상 조금 더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 에 이 재원 조달 방안을 꼭 크레딧에 대해서만 논의해서는 안 되 고 당연히 이 보험료 부담도 좀 더 높이고 다른 어떤 적자 수지 적자 등도 해소하고 뭐 그런 거에도 사실 국고 지원이 필요하잖 아요. 그런 재원 조달 방안은 우리가 이 남은 이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이 논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p>
주은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p>네 정창률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포괄성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은 사실은 그림에서 분모를 포괄성 척도의 분모를 인구로 두는 경우 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앞서서 사각지대 개념도 말씀드렸 듯이 그냥 수급 사각지대라는 말을 한다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 만 어쨌든 가입 관련해서는 분모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가 돼 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p> <p>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포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수급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비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입률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이게 소득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 자료를 통해서 추정을 해 볼 수밖 에 없는데 이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증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현황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p> <p>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탈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슨 의미냐라고 말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얘기한 맥락에서 이제 사업장 가 입자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인데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데 이제 국 민연금에 신고가 안 들어간 이런 상황을 이탈이라고 얘기를 한</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p> <p>그리고 박나리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여가지고 제가 20분 발표이기 때문에 포함은 안 했는데 두루누리 시범 사업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일부 굉장히 작은 지자체를 처치군으로 그러니까 처치군이 된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17개 광역 시도였는데 17개 광역 시도에서 일부 지자체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p> <p>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어떤, 어떤, 어떤 구가 예비 처치 집단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17개 광역 시도에 대해서 다 그 리스트가 있었는데 세컨드 픽을 대조군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고요. DID에서 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룹별로 프리 트렌드가 있었느냐 이런 건데 그림 제가 포함시켰는데 그 그림 보시면은 전혀 프리 트렌드 관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된 거고요. 광역 지자체 프로그램은 당연히 일부 지자체만 설치가 되어 왔고 대조군은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그 나머지 이게 들어가지 않은 프로그램이 없는 시군구도 썼고 비슷한 주변에 있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곳도 썼고.</p>
주은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다 설명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김도형위원	다 설명을 드렸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끝나고 따로 얘기를
주은선위원장	<p>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이제 두 분 발제자님께서 아마 합의 그러니까 어쨌든 의견을 좀 같이 하시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레딧 재정 정책 국고 지원으로 가야 된다 기금에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랬고 사전 지원 방식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당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여 시점이라든지 재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하신 것 같은데요.</p> <p>그 외에도 크레딧 자체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이견이 아니라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당연히 크레딧 군복무 했던 전체로 이제 확대하는 논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예 국가가 사용자로서 기여하고 본인이 가입자가 되는 방식으로 이제 좀 전환하자라는 얘기도 있으셨고요.</p> <p>당연히 전 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고 출산 크레딧 확대에 대</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해서 의외로 얘기가 안 나온 게 상당히 우리 통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논의에 비해서 그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상당히 좀 그렇지만 어쨌든 류재린 박사님은 돌봄 크레딧까지 또 확대할 것을 이제 제안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다른 내용들까지 다 정리할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p> <p>다만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이제 발제하시면서 우리 주제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인 거잖아요. 사각지대 해소 방안 어떤 제도 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제 60에서 64세 인구 가입 연령 상한을 높이는 걸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p> <p>근데 그건 통상적으로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많이 얘기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 이전 연령대의 사각지대 해소하고는 무관한 거 같아요. 사실 그렇다라면은 좀 제도 내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제활동 연령대 60세 미만의 연령대에 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p>
김도형 위원	<p>사실은 이 가입 연령 그러니까 납입 연령을 지금 연령에 연동하는 문제를 일반적으로 사각지대 논의에서 하지는 않거든요.</p> <p>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것이 제가 a, b라고 보여드렸는데 b부분 그러니까는 조세 순응 측면에서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뽀족한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많은 노력이 있어 왔고 실시간 소득 파악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죠.</p> <p>그렇게 돼서 저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지만은 서구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어쨌든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명 위원	<p>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 자문위원회 회의는 좀 통상적인 회의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p> <p>21대 국회 자문위원회 또 행정부의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제일 처음에 하고 난 후에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p> <p>근데 지금은 의사 진행발언을 맨 나중에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도 못하고서 회의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5차 재정계산 때 예를 들면 재정 안정화 방안 발표하는 저에 대해서 당시 김용하 위원장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 특히 반포 메리어트 호텔에서 회의를 개최를 했을 때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정안정 방안 발표이었음에도) 5분만 발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p> <p>이게 극과 극인데 우리 지금 22명 자문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발표를 25분, 20분 하다 보니까 22명의 위원들이 발언할 시간이 딱 한 번 2분이 될까 말까 해요. 우리가 이거 발제자료 들으러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참석한 분들, 연금 분야의) 선수들이에요.</p> <p>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건가 해서 격렬하게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 하면 발표 시간을 오늘처럼 회의 자료를 한 이틀 전에 제공하시면 발표 시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5분 정도로 (발표를) 하고 나머지 1시간 반 이상은 토론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p> <p>또 하나 마지막으로 22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회의 시간을 무조건 2시간으로 사전적으로 제한한다는 건 원활한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해 왔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니까 다들 생각을 하셨다가 5차 회의 때 의견들을 좀 주시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p>일단 오늘 시작할 때 회의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다. 제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명호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p>
윤석명위원	<p>위원장이 결정할 게 아니라 위원들이 결정해야 돼요. 이 문제를 왜?? 위원장이 결정합니까.</p>
주은선위원장	<p>위원님 우리 이 논의 사각지대 해소 논의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습다.</p> <p>그래서 이 논의가 마무리된 다음에 다음 논의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p>
김신영위원	<p>위원장님 마무리하시는 과정에서 군복무 크레딧 관련해서 두 분 발표자님께서서는 대략 동의를 하셨다고 정리를 하는 발언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 정리를 반드시 해야될 것이 저희 지금 청년위원 두 분은 거기에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였고요.</p> <p>워딩을 제가 지금 기억나는 워딩은 언 발에 오줌누기다 행동 경</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제학상 년센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위원장님의 발언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이렇게 취합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도 있었다는 걸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네 크레딧 자체에 대해서는 크레딧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김도형 위원님하고 류재린 박사님 두 분 위원님 얘기에서 군 복무에 대해서 수급권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통상적인 크레딧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용자와 피용자의 가입이라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p> <p>크레딧의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p>
<p>김 학 주 위 원</p>	<p>그리고 출산 크레딧에 대해서도 사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p> <p>이 제도를 연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두고 싶습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네 박종상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신거죠?</p>
<p>박 종 상 위 원</p>	<p>네 그리고 2시간 뒤에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해도 되는 건지</p>
<p>주은선위원장</p>	<p>아니 그러니까 사실 계속 좀 논의가 반복되는 감이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새로운 의견을 혹시 제안을 하시는 건지</p>
<p>박 종 상 위 원</p>	<p>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면 혹시나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까 봐</p> <p>제 생각에는 이 사각지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좋은 거였지만 사실 이걸 구조 개혁이랑 이제 연결시키려면 작년에 있었던 연금 개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거랑 같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득 대체율 인상은 사각지대 해소와는 정확성이 맞지 않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p> <p>그다음에 보험료율 인상은 여전히 계속돼야 된다는 게 김 위원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정리를 안 하시고 따로</p>

발언자	의견을 위한 최종본
주은선위원장	네 말씀을 하시죠.
발언자미확인	잠깐만요. 위원장님
주은선위원장	논의를 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가 굳이 논의를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박종상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이제 두 분 발제의 포인트 각각에 대해서 두 분 발제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맞는지.
류재린위원	<p>제가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의 포인트는 이게 급여 사각지대가 적용 사각지대에 누적된 결과다라는 거였고 보편적 포괄성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솔직히 3% 포인트 높인 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p> <p>그런데 말씀하신 취지가 보편적 포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대체율 높이면 분배가 어렵겠다 그런 취지라면 거기엔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이번 개혁에 소득대체율 조금 높인 게 그게 어떻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지는 않았고 그게 제 발표의 포인트가 아니었다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p>
원종현위원	저 질문이 하나만 있는데요.
주은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시죠.
김도형위원	저는 특별히 이견이 없고 박종상 위원님께서 잘 논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은선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원종현위원	<p>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분 의견들이 저랑 너무 비슷해서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짚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p> <p>류재린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26페이지 그림이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늘 느끼는 바와 같이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소득 신고자와의 어떤 괴리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고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지역 소득 신고자도 지역가입자들의 아마 사각지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p> <p>여기서 봤을 때는 아마 소득월액도 있습니다만 평균 가입기간 등이 보통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지금 크레딧이라는 문제가 들어가는 것도 이 가입 기간을 그래도 최소 연금 지급 가능 연령까지 어쨌든 가입 기간을 맞춰주는 데 있어서 아마 큰 역할을 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부분은 저런 거예요.</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도 여기 보면은 평균 소득월액이 지역 소득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고하는 게 한 110만 원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제일 지금 빈도 수가 많은 부분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국민연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이게 과연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의 연금액의 징수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좀 저는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p> <p>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소득 신고자들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해서 좀 높여주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가 크레딧이라든가 어떤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과연 우리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각지대 해소라는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제일 궁금해요.</p>
류재린위원	<p>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가입자들의 이 소득이 크게 변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소득을 낮게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낮게 신고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좀 보면 적어도 공적 자료상으로는 아예 소득이 파악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p> <p>제가 여기 옆에 이렇게 그림도 있는데 공단에서 관리하는 이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 신고를 보면 저희가 복지부에 요청받은 자료 공유받은 자료에도 있는데요. 공적자료로 파악되는 소득과 이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을 비교해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거의 다 사실 상향 신고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p> <p>그러니까 이게 아예 소득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공적 자료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가입자가 소득 신고를 1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공적 자료상으로는 이 사람이 100만 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p>
발언자미확인	상향신고가 된다고요? 지역가입자가?
류재린위원	<p>네 나눠준 자료에 다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역 가입 대상의 소득 분포와 가구분포 같은 데서 뽑았을 때 이 지금 저희 26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은 아닌 게 확실한 데 공적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소득은 그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공단에서 파악하는 거는 공적 자료보다는 상향 신고한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p> <p>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어쨌든 보험료 지원을 하더라도 (청취불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 가입자를 이 제도적으로 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99년에 우리가 이 농업인과 도시 지역 자영자를 포괄할 때 저는 그때 좀 같이 안 안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p> <p>근데 이미 제도가 많이 이렇게 왔어요 왔고 그 가입자가 다 포괄돼 있는데 이 사실은 지역 가입자를 우리가 계속 안고 간다면 사실은 이 공적 자료상의 소득 파악률을 최대한 높여서 실제 소득과 가깝게 만들어가는 노력 그리고 그거 그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p> <p>이 지역 소득 신고자의 소득 분포가 그렇게 가면서 동시에 보험료 지원도 하는 방식으로 가서 가입자를 포괄시키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p>
박명호위원장	<p>저도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박명호입니다.</p> <p>그러니까 지역 소득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들의 소득 체계를 보게 되면 소득세 부과 체계를 보게 되면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600만 원을 내가 월 번다 하더라도 다 간이과세자예요. 그렇죠? 사실상 간이 과세자 수준뿐이 안 돼요.</p> <p>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면 추계 과세라는 걸 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그럼 비용이 인정해 주는 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 통계라고 하는 국세청에 잡는 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낮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낮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체계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p> <p>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막연한 기대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소득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매출을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계 신고라고 하는 그런 소득세 체계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 그러면 실제 소득하고는 달리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다.</p>
발언자미확인	<p>그러면 RTI나 실시간 소득파악이나 또 국세청으로 이관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박명호위원장	<p>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용근로직 관련된 거니까 일용근로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 사업주가 준 돈에 대해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소득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드러낼 때 내가 실질적으로 번 소득이 5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단순 경비나 기준 경비나 소득세 추계 시스템에 들어가면 비용을 많이 잡아요.</p> <p>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벌었는데 95%를 갖다가 비용 공제해 준다. 매출액이 1억인데 그러면 95%는 다 비용으로 떨어지는 거고 나머지 5%만 소득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소득은 그보다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비용은 그것보다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가 갖춰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라 하더라도 방법은 없어요.</p> <p>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으로 신고받은 것만 자기네가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 소득은 우리가 말하는 실제 소득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벌어들여서 집에 가져가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p>
류재린위원	<p>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오늘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드렸는데 저희 필요경비율도 점점 조정해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되게 어렵죠. 당연히 어렵고 안 되고 그렇지만 그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오히려 상향 신고되고 있다고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거죠.</p> <p>근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 가입자들이 전부 다 자영자는 아닙니다. 임금 근로자도 26% 야까 제가 일단 말씀드렸고 소득이 아예 없는데 그냥 우리가 소득 있어요 하고 신고하면 그냥 지역 가입자를 받아주거든요. 그게 다 신고 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p> <p>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소득과약 체계가 높아지면 신고 소득이 아니고 국세청에 있는 소득 그리고 국세청에 있는 소득도 필요경비율을 조정해서 좀 더 확대하거든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방향성은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p>
발언자미확인	(청취불가)
류재린위원	<p>그러니까 (청취불가)에는 지역 가입자라는 게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고요. 근데 제도적으로 지역 가입 대상인 자영자 일부 임금근로자를 봤을 때 분포가 이것보다 훨씬 높죠. 네 훨씬 더 올라가 있</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주은선위원장	<p>습니다.</p> <p>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럼 충분히 얘기가 된 걸로 이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가입자 자체가 굉장히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걸로 커버가 되지 않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p>
윤석명위원	<p>거기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같은 사각지대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적지만 상대적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과 같은 구조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p> <p>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정리한 한 쪽짜리 회의 결과 보고서를 보게되면 (국회 특위 의원들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p> <p>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위원장님들이 억지로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발제자들이 누구보다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회 특위 위원분들한테 우리 회의 결과를 보고할 때는 각각 한 쪽씩 발표자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리해서 두 쪽을 올리는 쪽으로 우리 회의 자료들을 요약해서, 국회 특위 위원분들한테 전달해야 그분들이 자문위원회 (회의자료)를 통해서 자문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논의됐는지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p>제가 할 얘기를 미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각지대 해소 논의에 이어서 우리 이제 논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논의 주제가 있는데 사실은 순서를 제가 생각하는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 말씀을 해주신 김에 이 부분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p> <p>위원장실에 보고하는 자료 우리가 논의 주제들을 그냥 요약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근데 이것도 각 개별 위원들이 그거를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주로 한두 분이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다 저렇게 수정하면 좋겠다라고 서로 의견을 내서 이제 수정된 형태로 또 제공이 되는 데요.</p> <p>그거보다는 발제하신 분이 반 장 정도로 한 장은 너무 많고요. 반 장 정도로 각각 정리를 해 주시면 그걸 합쳐서 위원장실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타당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위원장 양측 위원장이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윤석명 위원님 정리해 주신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분량만 다릅니다. 분량은 다른데요. 그 정도로 해서 위원장실에 보고하는 방식은 그렇게 딱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p>
윤석명 위원	<p>반쪽 분량만의 회의 결과물 자료로, 우리의 이 치열한 논의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p>
정해식 위원	<p>회의진행 발언을 저도 좀 하나만 하면 그러니까 어떤 회의에서도 시작을 할 때 회의를 몇 시간 하겠다고 생각을 정하고 그다음에 콤팩트하게 회의를 해야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회의를 가 가지고 회의를 몇 시간 하겠다고 전혀 감이 안 가는 회의를 별로 저는 그렇게 그런 회의를 안 가봤어요.</p> <p>회의를 2시간 하면 2시간을 하겠다 2시간 반을 하면 2시간 반을 하겠다 정해줘야죠. 정해주고 나면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이야기는 하되 안 할 이야기는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오늘 이 회의를 몇 시에 끝낼 건 지라도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뭘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p> <p>저는 4시 40분이 되면 일어날 겁니다.</p>
주은선위원장	<p>논의를 콤팩트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논의를 우리가 끝도 없이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논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향후 논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식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4시 40분까지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5시까지의 논의를 끝내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하실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드린 자료들을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p> <p>두 번째는 이 향후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게 한 장짜리 여러분들이 주셨던 제안해 주셨던 논의 주제를 저희 양측 위원장이 합의한 것 그리고 논의가 필요한 거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거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주제 중에서 양측 공동위원장이 논의가 필요하겠다고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 이견 없이 논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한번 이제 훑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그리고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 제안해 주신 주제 중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거죠. 합의가 되지 않고 이견이 있는</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그 의제로 논의 주제로 올릴 수 있는 게 그래도 합의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올리고요.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은 사실 이번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의제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시고 보고 지켜보고 차후에 또 논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p> <p>그리고 두 번째 자료 3개의 자료 드렸잖아요. 두 번째 자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한 자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위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위원회죠.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적, 논의 범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문에 보시면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구축 및 국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의 범위와 방향에 대해서 어떤 테두리를 정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논의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p>
박명호위원장	<p>위원장님 먼저 일 양측 공동위원장이 합의안이라고 놓은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요 합의안에 있는 주제들은 주제로 우리가 전체 회의에서 승인한 걸로 간주하도록 하는 식으로 하시죠.</p> <p>그리고 난 다음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개별 논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정 안 되면 다시 회의라도 해가지고 주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원종현위원	<p>저기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까 저기 주신게 이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지금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우리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여기서 약간 이 뒷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블라블라 있는 것 같은데</p> <p>이거는 지금 특위이지 사실 저희 자문위원회가 자문위원회와 특위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향후 논의 주제를 정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저희는 특위를 자문하기 위한 것에 대한 본질성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정해서 이거를 이게 특위로 올라가면 특위는 이걸 가지고 다 받아서 이걸 법률화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꾸로 지금 특위가 사실 저희 자문위원회 그냥 말 그대로 자문이잖아요.</p> <p>자문 받는 어떤 그런 사항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말을 해 놓</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위원장님에게라든가 어떻게 좀 바라는 게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정하다 보면은 그냥 저희가 그냥 특위가 이라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받은 것을 이제 특위 쪽에서 다 포괄적으로 이걸 다 볼 건가 아니면 이걸 다 논의를 특위에서 하나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뭔가 그 관계성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그때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은선위원장	사실 특위가 많이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원 중 현 위 원	그래야 주제를 좀 정할 것 같아서요.
주은선위원장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이 범위 안에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다룬다라는 거 그 두 가지인 거죠. 사실은
원 중 현 위 원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돼서 개혁 방안 다루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정말 잘 돼가지고 저희가 다 이제 합의를 봤다고 치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이 특위로 올라가면 특위는 그 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주은선위원장	여기서 합의했다고 해서 특위에서 합의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원 중 현 위 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한 범위나 그런 것도 없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정하고 저희가 올리는 건가요?
주은선위원장	<p>자문위에서 다룬 어떤 개혁안으로 구체적인 이제 개혁의 안들로 그러니까 방안들로 이제 다루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특위의 논의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고용으로 이 논의는 참고용이 되는 거고요.</p> <p>그래서 의제 있으면은 이제 이 참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하고 그리고 전문성 있는 견해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 의견이나 우리가 제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위원님들을 모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있으면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합의가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 자문 의견이 좀 무게를 가지려면 가능한 한 좀 가격을 높이고 어느 범위 안에서 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하면 이게 훨씬 자문 의견으로서는 훨씬 더 좀 무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p>
원 중 현 위 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그런 것은 아닌데 그냥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러니까 특위에서는 지금 국영수를 시험 봐야 되는데 저희가 자칫 사회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참고서를 보내주신 것 같은
박명호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위의 제안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연금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고 그 가운데 노후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의 개혁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게 연금개혁 특위의 본질적인 거거든요.</p> <p>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자료를 생성해서 드리면 되는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 자료 연금개혁 특위의 참고 자료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합의안에 대해서 일단 이 논의 주제 안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명위원	<p>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윤석명입니다.</p> <p>합의안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배포된) 참고 자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자료를 주셨어요. 많은 위원 분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고 있는 어떤 과제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연금특위에서 합의된) 이 주문 내용을 보면 그 취지가 명확합니다.</p> <p>두 문장이예요.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하나예요. 국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재정 안정화 조치 마련해 봐라!! 개혁 방안 마련해 봐라!! 이거예요. 이 내용 위주로 향후 논의할 주제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그러면 일단 합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럼 이대로 주제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석명위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역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주은선위원장	<p>논의 주제로서 공적 연금과 국가의 역할을 제안을 한 취지는 합의를 했던 이제 박명호 위원장님이 제안하셨던 거에 기초해서 약간 변형을 했는데요.</p> <p>공적 연금과 국가 역할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향후에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공적연금과 사적 연금의 역할 혹은 재정에 관한 이제 논의, 재정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는 데 토대가 될 만한 논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왔습니다.</p>
윤석명위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자나요. 뭐냐 하면 이게 공적연금과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추상적으로 공적 연금과 국가의 역할을 하면 이걸 뭐 온갖 잡스러운게 다 포함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김학주위원	이 합의안 내용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박명호위원장	<p>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발제를 하시잖아요.</p> <p>발제하시는 분들이 내용은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는 게 자기가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은 좀 브로드하게 그러니까 약간 좀 넓게 설정해 놔야지 발제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윤석명위원	<p>이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자문위원회인데 자문위원회로서 특위가 요구한 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위원 자신이 발제할 능력이 없으면 발제하지 말아야죠!!</p>
정해식위원	<p>그러면 지금 문제가 더 의견을 말씀드리면 합의안에 조금 모호성이 있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해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쪽지는 소득 보장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재정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것 같고 여섯 번째는 소득 보장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하고 일곱 번째가 조금 정체성이 좀 모호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p> <p>그러니까 예컨대 공적 연구가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면 이걸 재정 안정화 관점에서 볼 건지 소득 보장 관점에서 볼 건지로 좀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요국의 연금 개혁 사례도 사실은 재정 안정화 개혁도 많고 소득 보장 개혁을 한 케이스들도 있거든요.</p> <p>(청취불가) 사례라든지 우리도 둘 다 해당하지만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조금 두분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소득보장 쪽에서 관점을 보고 정리하신 건지 재정안정 쪽에서 정리하신 건지 아니면 이 주제에 한해서는 한 쪽에서는 소득보장을 하고 한 쪽에서는 재정안정을 하자라고 합의를 하신다거나 그러면 어떨까 좀 제안 드려 봅니다.</p>
주은선위원장	<p>공적연금과 국가 역할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논의를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제하시는 분의 재량에 따라서 초점을 어디에 둘 건지는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p>
박철언위원	<p>다섯 번째 자동조정장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연금 특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법안 통과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모수개혁부터 합의를 하고 22대 국회 열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해서 구조 개혁을 진행하는 거라고 저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그래서 하기로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사례 및 시사점이라고만 하면은 이거를 도입할 건지 여부에 관해서 저희가 또 한 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너무 피곤한 논의고 향후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이 팩트인지 확인을 해보시려면은 당시 특위 김미애 의원님이라든지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p> <p>도입 사례 및 시사점이라고 하면 도입 여부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이 논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프린시플인 국회 특위에다가 다시 한 번 크로스 체킹을 하시고 확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일단은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박철언위원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주은선위원장	도입사례 및 시사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철언위원	보건복지위에서 저희가 국회 특위 의결하면서 특위 위원들끼리 여야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면서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교섭단체 의원이 자동조정장치 동의하지 않을 거면 특위 사임해라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논쟁도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이걸 도입하기로 했는데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2대 국회에 민간자문위 다시 개설하게 됐는데 이거 도입 반대하는 분이 여기 왜 앉아 있냐 이걸 국회에서의 격론이 있었기 때문에
주은선위원장	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논의 주제를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도입 사례 및 시사점이 아니라 그럼 뭐 도입 방안을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박철언위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남찬섭위원	<p>근데 이걸 지금 합의한 주제는 사실 이 모든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안정 입장에서든 볼 수 있고 소득보장에서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하고 일곱 번째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주제 전부 다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p> <p>그 부분은 어느 한쪽만 논의한다기보다는 양쪽 다 논의가 필요한 어차피 지금 구성 자체가 재정안정 (청취불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제를 정하더라도</p>
주은선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 논의 주제는요. 논의 주제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한 게 전제한 게 아니라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에서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크게 이견이 없으시면은 제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는 의견 정도를 받아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p>
<p>김학주 위원</p>	<p>지금 참고 자료를 보니 이 자문위원회가 결국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p> <p>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루는 논의 주제 역시 단순히 학술적인 주제를 논의하는 데 그치지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p>앞서 남찬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겠으나, 보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 관련한 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p> <p>예를 들어, ‘공적 연금과 국가의 역할’과 같은 주제는 학술적 논의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부적절한 논의 주제로 보입니다.</p> <p>여기서 우리가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취지가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p>
<p>주은선 위원장</p>	<p>그거는 사례 이후에 사례 발표를 듣고 논의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적 연금과 국가 역할 이 논의 주제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거죠?</p>
<p>김학주 위원</p>	<p>네.</p>
<p>주은선 위원장</p>	<p>학술적이다. 그 의견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p>
<p>김학주 위원</p>	<p>연금개혁 사례도.</p>
<p>주은선 위원장</p>	<p>연금 개혁 사례도 그럼 다루지 말자라는 생각이신 건가요?</p>
<p>김학주 위원</p>	<p>아니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서 연금개혁 사례 및 개혁 방안 이런 다든지 연금개혁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개혁 방안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바꿔주시면</p>
<p>윤석명 위원</p>	<p>특위에서 주문한 것이 재정안정 조치 및 개혁 방안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발표를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발제자가 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하나 여기서 빠진 것이,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저희가 회의 초기에 인사혁</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신처 및 관련 4대 연금 운영하는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다음 회의는 벌써 5차 회의가 되거든요 지금. 잠깐만요!!</p>
<p>주은선위원장</p>	<p>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p>
<p>윤석명 위원</p>	<p>아니 중요한 거 여기 빠져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나면 우리가 지금 발제하는 건 그 발표자 개인의 어떤 선입관이나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갖고 발표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뭔가 일단 체계적으로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그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어떤 현황에 있는지 관계 부처한테 일단 현황 설명을 듣고 나서 시작을 해야지!!</p>
<p>박명호위원장</p>	<p>잠깐만요.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려고 순서를 잡아놓은 게 있고요. 윤석명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회의에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p>
<p>주은선위원장</p>	<p>이거 얘기하고 할게요. 일단은 정해식 박사님 나가셔야 된다고 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발언 기회 드리고 보내겠습니다. 기차 타셔야 되는 거 같아서.</p>
<p>정해식 위원</p>	<p>저는 회의를 좀 시간을 정해놓고 논의를 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방에서 오는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저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주제를 이렇게 하고 각각의 발제자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이제 발제자를 2명을 두기 때문에 발제하시는 분께서 하위 속지를 제목을 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p> <p>아마 이제 주제를 설정하신 두 분 위원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다 드리는 어려워서 일단 현재까지는 지금 합의되신 주제로만 다뤄도 제가 보기에는 한 3~4개월 정도 지나갈 것 같거든요.</p> <p>그리고 나면 혹시라도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 논의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디 부분을 파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논의 필요하다라는 이 디테일한 꼭지들은 약간 너무 과하게 나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p>
<p>주은선위원장</p>	<p>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박종상 위원</p>	<p>저기 미적립 부채라고 적어놓은 건 이게 뭔가요?</p>
<p>발언자미확인</p>	<p>논의 필요해요.</p>
<p>원종현 위원</p>	<p>미적립 부채라고만 딸랑 있다보니까 아까 위하고 비슷한 같은 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청취불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저는 정해식 박사님도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저희한테 이렇게 너무 뻑뻑하게 가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벌써 저도 네</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번째다 보니까 이거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부분은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중간중간에 좀 나오더라고요.</p> <p>그래서 사실 좀 그 부분에 대한 여지를 좀 약간 줘야 저희가 일정하고 있을 때 근데 모든 일정을 만약에 이런 어떤 논의 주제를 정해서 일정을 매꿔 놓게 되면은 이 사이에서 좀 더 심화한다고 그럴까요? 지금 저희는 그냥 여기 자문위원회에서 원론만 말하고 각론 부분 한 번 더 얘기할 틈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어서 약간의 여지도 좀 그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p>
주은선위원장	<p>사실 오늘 논의하면서도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논의하면서도 좀 뽑아내고 싶은 심화된 주제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 개인으로서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비임금 노동자 국민연금 확대 문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까였기 때문에 여기 논의의 필요 주제로 일단 넣었고요.</p> <p>근데 어쨌든 박사님 의견은 좀 합의된 거 안 중심으로 논의하고 나머지는 또 여기에 놓고 논의 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좀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p>
원종현위원	<p>그런 합의된 것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힘들게 합의하셨을 텐데</p>
주은선위원장	<p>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연금 개혁 사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유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박명호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주제별로 또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써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p>
박명호위원장	<p>참고로 저희가 합의안이라고 마련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희망 논의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묶는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것들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올린 거고요.</p> <p>그리고 아까 이제 미적립 부채 얘기를 하셨는데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미적립 부채와 관련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까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종상 위원님 같은 경우는 미적립 부채의 계상과 할인율, 김신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미적립 부채와 노인 빈곤율에 관련된 국민연금 개혁 담론의 정치경제학 그리고 윤석명 위원님께서는 주요 국제기구 계리사 협회의 미적립 부채와 누적 적자 개념 사용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어요.</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세 분이나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미적립 부채와 관련된 서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 주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제안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제목을 정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해가지고 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키워드만 넣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p>네 송헌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p>
송헌재 위원	<p>예 주제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주로 의사진행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첫 번째 회의에 못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세 번째 참여한 건데 발제자가 발제를 하고 그다음에 발제자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그다음에 또 발제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p> <p>왜 그렇게하기로 결정된 건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발제하신 분은 계속 대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저는 아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딱 들었던 생각인데 여기에 논의된 내용이 나는 별로 질문은 없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또 질문이랑 연결시켜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답변을 해야되는</p>
주은선위원장	<p>질문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 혹은 발언, 질문 혹은 의견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주로 이제 질문들을 이제 하셔서 이제 대답하는 방식으로 된 거고요.</p>
김학주 위원	<p>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p>
주은선위원장	<p>네 말씀하세요 김학주 위원님</p>
김학주 위원	<p>지난번 회의뿐 아니라 그 전 회의에서도 질문을 한 이후에는 추가로 발언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문을 우선해야 된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1인당 한 번 질문하는 것 외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p> <p>제 생각에는 두 분 발제자 발표 시간이 다소 긴 편입니다. 20분도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전체 회의시간을 2시간으로 줄인다면 현재 위원이 22명인데 1인당 발언 시간이 2~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 번 하고 나면 추가 발언 기회가 없어집니다.</p> <p>그래서 각 발제자 발표 시간을 15분으로, 두 분 발제 총 30분으로 제한하고 대신 22명의 위원님이 최소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발제자 두 분이 약 40~50분 쓰시고 이후 답변에 20분 사용하면 1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위원장님의 의사진행 발언까지</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포함하면 1시간 반 이상이 되고, 만약에 전체 회의가 2시간이라면 남은 30분 가지로 22명이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주은선위원장	핵심은 발제 시간을 줄이자라는 거죠.
송헌재위원	그건 아니고요. 발제 시간을 줄이자는 것보다는 아까 예를 들어 박종상 위원님께서 발제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안 하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김학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김학주 위원님한테 제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구조는 오로지 발표자한테만 질문하게 돼 있어서
박명호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주은선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호위원장	근데 그런 형식으로 된 거지 굳이 우리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주은선위원장	근데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제 끝나고 발제자한테 그래도 질문이 있으면 하도록 하는 거는 이제 사실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발제자한테 할 필요도 없고 그 주제에 어떤 특별 주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석명위원	제대로 토론이 되려고 그러면 발제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 발제를 듣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상호 토론하는 쪽으로 가야 이게 의미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발언자미확인	맞습니다.
주은선위원장	근데 일단은 그래도 이게 초반이었기 때문이에요. 발제 내용 자체가 각 영역들을 넓게 넓게 다루고 있잖아요. 각 주제들을 지금 굉장히 넓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 전반적인 이해는 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역동적인 토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음 논의 때부터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 자체가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논의에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오늘 이제 받으셨으니까 해보시고요. 이걸 먼저 합의된 주제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루면서 중간에 이에 관해서 다시 의견 듣고 논의를 좀 추가적으로 그런 주제를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윤석명위원	이제 첫 번째 “공적연금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하면 네 번째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국고투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입 가능성 및 방안 검토”가 또 있어요. 어느 정도 중복이 됩니다. 이걸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주은선위원장	<p>공적연금과 국가 역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에 대한 역할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재정에 대한 역할로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이제 국고투입 문제하고 정확하게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제 기초층위 재구조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조정 그리고 국고 투입 문제, 자동조정장치, 퇴직연금 이 모든 것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p> <p>그래서 이거는 발제자가 충분히 재량을 가지고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측 위원장이 토대로 우리가 필요한 논의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p>
윤석명위원	제가 소수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반대합니다. 이 주제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박명호위원장	첫 번째는 아니고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무순 위입입니다. 아직 순서를 정한 건 아닙니다.
김학주위원	<p>지금 말씀하신 합의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p> <p>이것이 22명 중 일부 위원들간의 합의를 의미하신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두 분의 합의인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p>
주은선위원장	위원장 합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승룡위원	아까 토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걸 의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발언자미확인	결론일 수도 있죠. 어쨌든 첫 번째에 나와 있으니까
신승룡위원	제 생각에는 토대는 이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11월에 시작한 위원회 지금 1월인데 뭐하러 또 토대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명호위원장	아니 한번 의견 들어보세요. 다수결 해가지고 빼버린다고 그러면 빼버리시고
주은선위원장	논의 주제를 선정하는 걸 다수결로 하는 건 정말 끝까지 가야지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논의 주제는
김신영위원	위원장님 두 분의 어느 정도의 권한도 좀 인정을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철언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밑에 6개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면 굳이 첫 번째 논의를 분리해서 다룰 실익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다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때 논의 하면 되는데 왜 이것만 따로 분리해서 논해야 되는지? 따로 분리해야 된다면 이 논의에 부채로서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그냥 거대 담론에 대해서 저희가 답이 나오지 않는 논쟁만 할 것 같습니다.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남찬섭위원	<p>근데 우리가 나중에 특위 지난 21대 때도 보면 이제 민간 자문위원들은 이제 국회에 제출해야 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안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게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p> <p>그런데 이제 모든 보고서가 들어갈 때 처음부터 제일 처음부터 1장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렇게는 잘 안 들어가죠. 처음에는 이제 도입부터 시작해서 서론이라든지 총론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각론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특위에서도 민간자문에서 (청취불가) 들어가게 되니까</p> <p>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주제를 다루는 순서를 당장 다음 주에 하자 이런 게 아니면 주제가 무거우니까 무겁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국회 특위에다가 올해 말에는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총론에 해당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p> <p>그러니까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각론에 들어가는 보고서는 사실 그렇게는 잘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요 자체가 특위에서 법률안 논의를 바로 반영하는 안을 바로 만들지는 않더라도 전체기능이 되는 어떤 도입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정도로</p>
주은선위원장	<p>우리가 박철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p> <p>이게 왜 필요합니까? 다 연관되는데 다음 논의들을 잘 더 잘하기 위해서</p> <p>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p>
박나리위원	<p>이게 혹시 합의가 되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바로 논의가 다 체결이 되는 건가요? 이걸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회 특위에 계신 위원장이나 위원분들이랑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p>
박명호위원장	<p>지금 재량권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p>
주은선위원장	<p>일단 1차적으로 이제 여기서 정리해서 하는 게 이제 의미는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특위에서 확 뒤집는다 그런 일은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보편적으로 좀 보편타당한 다뤄야 할 주제들 어떤 필요성에 근거하여서 선정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p> <p>이제 여기서 특위에서 이제 요구하는 주제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주제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 정도의 변화는 있을 거다라고 말</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썬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명 위원	마지막으로 발언 한 번만 더 할 기회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남찬섭 위원님께서서는 총론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총론에 왜 공적연금 국가 역할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여타) OECD 회원국들과는 달리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고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럼 총론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발언자미확인	이 주제에 그런 걸 넣어도 되죠.
윤석명 위원	아니 국가 역할이 첫 번째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남찬섭 위원	국가 역할을 빼자고 하셔도 되고 국가 역할을 더 하자고 해도 되고 그거는 발제자가 정하는대로
김신영 위원	아니 정치 철학에서도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들이 있고 다른 의견들이 있고 또 이 제목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그래서 정치 철학 얘기만 하고 끝나시진 않을 거잖아요. 분명히 무슨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고 디테일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은선위원장	그 이 주제 중에. 네 말씀하세요.
류재린 위원	저도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논의할 건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신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발제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합의해 온 데 충분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주은선위원장	<p>고민을 알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견은 좀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양측 위원장이 합의한 안이니 만큼 일단 여기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의 필요 안에 대해서는 역시 추후에 보시면서 천천히 다루도록 하고요.</p> <p>마지막으로 안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안이 하나 들어왔었는데요. 윤석명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부처 보고를 좀 받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처 보고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는 합니다. 특수직역 연금을 다루는 부처들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해서 복지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이제 다 국방부도 포함이 되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특수직역 연금까지 다 이제 포괄을 해서 잠재 부채 규모를 산정한 것을 이제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p> <p>그래서 그에 관해서 부처 보고에 관해서 이제 양측 위원장 사이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처 보고를 받자라는 입장이 있었고 또 다 아는 현황에 관한 얘기를 굳이 부처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또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처 보고를 받으실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을 논의 주제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찬섭 위원	근데 그전에 제가 지난번 국회 특위를 (칭취불가) 기억이 좀 있는데 부처가 보고할 때는 국회 특위 국회의원들이 있을 때 보고를 하지 민간 자문위원한테 보고한 걸 못 본 것 같아서
윤석명 위원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회의에서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남찬섭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윤석명 위원	아니!! 확인해 보세요!!
남찬섭 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없는데
주은선위원장	<p>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연금 개혁 특위에서는 보고가 있었어요. 연금 개혁 특위에서는 이제 고용노동부, 복지부, 그리고 금융위 또 어디였지 기재부 이렇게 4개 부처의 보고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제도 현황에 대한 보고였어요. 그 보고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보고가 안 됐나요? 그 자료는 특위에서 받은 자료는 특위 위원들한테 아니 특위 위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자문위 위원들께도 공유를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p> <p>어쨌든 중요한 거는 특위에서 이미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해당 자료는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 위원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가 논점은 아닙니다. 이전 위원회에서 했어도 안 할 수도 있고요. 필요 없으면 안 했어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어요.</p>
원종현 위원	보고한다고 해도 아니 말해도 괜찮을까요?
주은선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고 (칭취불가)위원님 말씀하시죠.
원종현 위원	<p>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먼저 그냥 시간 없으니까 빨리 생각만 말할게요. 저는 어떤 보고라고 해서 와서 쪽 앉아놓고 마치 의견 듣는 것보다 저희가 필요하면 정보라고 생각한다면 그 내용을 그쪽 부처로부터 보고할 내용을 그냥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p> <p>굳이 그렇게 어떤 안건으로 해서 앉아서. 그냥 서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검토하고 들어보고 우리가 나중에 뭐 할 때마다 참고로 쓸 수 있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p>
주은선위원장	제3의 의견입니다.
윤석명 위원	제가 제안을 드렸으니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언제 했냐면 21대 국회 특위는 1기, 2기가 있었습니다. 1기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었고, 이 보고를 받자는 건 뭐냐 하면 당시 국회 특위 위원분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고 받은 내용) 그걸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 보고 자료를 저희가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자는 겁니다!!
박철언 위원	이제 업무 보고의 형식은 운영의 묘겠습시다라는 이 자리에 앉아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계신 분들 다 전문가들입니다마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구와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정책 실무에서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항상 정책은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 기회가 닿는다면 업무 보고 받는 거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p>
김신영 위원	<p>말을 보고라고 하지 말죠. (청취불가) 모셔서 들어보면 되잖아요.</p>
남찬섭 위원	<p>제 기억에 21대 때는 국회 특위 위원들이 업무 보고 절차를 이미 정했대요. 정하고 제 기억에는 두 번째 보고받을 때 이제 청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특위 위원들이 참석을 안 했대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으면 제 생각에는 민간 자문위원들만 앉아 있는데 저기 정부 부처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면으로 그냥 하는게</p>
주은선위원장	<p>필요하면 이제 요청을 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박명호 위원장님이 아까 발언하시겠다고 신청하셨는데요.</p>
박명호위원장	<p>제가 아까 김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라고 하니깐 좀 그런데 일단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부처에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계획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p> <p>그런 계획을, 어떤 계획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논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박나리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 중 하나도 첫 생애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그리고 예를 들면 비임금 노동자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 이러한 것들을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p> <p>그런데 이미 정부에서 부처에서 이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어보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가 그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특별히 저희가 할 의미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p>
주은선위원장	<p>이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잠깐만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에요.</p> <p>저는 사실 이 업무보고 내용 업무보고 경험 이제 업무 보고 각 부처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도 현황을 이제 보는 거는 사실 이렇게 만나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시면은 다 아는 얘기들이 제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p>정말 금융위원회 연금저축 현황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고 퇴직연금 현황 사실은 우리 이거 이 논의 주제 가지고 발제하면서 나오는 얘기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해를 위해서는 사실 중복되기도 하고</p> <p>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까운 시간을 내서 와가지고 이렇게 평면적인 얘기를 평이한 평면적인 보고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그래서 시간이 아깝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p>
김 학 주 위 원	<p>저는 그 자리가 단순히 평면적인 얘기를 듣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p> <p>아까 서면보고 형식을 제안해주셨지만, 이 논의가 단순히 정부의 대표성을 형식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대안의 설계, 거버넌스 체계와 정책적 정합성이 확보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논의를 위한 자리를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p>
박 철 언 위 원	<p>첨언을 드리자면 내용적 측면에서 평면적이라고 걱정을 하셨지만은 그게 평면적이 될지 입체적이 될지는 여기 앉아 계신 위원 분들이 질문을 얼마나 잘 설계하고 사전 질의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운영의 묘를 고려하지 않고 걱정하는 건 좀 선제적인 우려인 것 같고요.</p> <p>여기서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고 실제로 그게 국회에서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일 안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발제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이 내용적 측면에서 훨씬 전문적이고 더 뛰어날 겁니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 분들께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현황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현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저희가 정책 제언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김 학 주 위 원	<p>저는 여기 민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발제자에게 질문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간자문위원회의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p> <p>구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내용이 정책적으로 타당한</p>

발언자	의결을 위한 최종본
	지, 현실성과 정합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박 나 리 위 원	(청취불가)
김 학 주 위 원	부처 보고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윤 석 명 위 원	그런 한계는 있다는 건 최소한 알고 접근하는 게 좋다는 거
주은선위원장	저는 사실 굉장히 불필요한 절차가 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게 왜냐하면
윤 석 명 위 원	왜 혼자 생각을 (위원들에게) 자꾸 강요합니까?
주은선위원장	아니 혼자 생각은 아닌데 어쨌든 부처 보고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되는 바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험을 봤을 때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그냥 우리가 지켜보고 굉장히 현황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제 보고를 받고 그냥 각자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 게 이미 상례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의미 있는 자리가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지만
윤 석 명 위 원	아니 다수 위원들이 지금 현안 설명을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위원장 (혼자 나서서)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나요?
발언자미확인	서면 대체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김 신 영 위 원	거수를 하던가 결정을 하시죠.
김 학 주 위 원	여기 민간자문위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자리입니다. 학술대회에서 발제자 발표 듣고 원고 내용에 대해 단순히 질문 몇 가지를 하는 형식의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 나 리 위 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주은선위원장	서면으로 공유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언자미확인	민간자문위에서 결정하신다고 공무원분들 부를 수 있는 게 혹시 구속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후 청취불가)
박명호위원장	맞아요. 저희가 여기서 결정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런 이벤트가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협조를 저희가 구하는 거죠.
송 헌 재 위 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저희가 요청을 하고 (청취불가) 가는 걸로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은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분들이 원하시니까 부처 보고를 요청을 하고요. 다만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특위에서 다루는 이 제도의 범위 안에서부터 부처 보고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민, 기초, 퇴직, 개인연금을 다루는 부처들로 한정해서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요청 부처에게 문의해서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는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